Ⅱ. 학 사

- ▶ 한남대학교 학칙
- ▶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 ▶ 등록에 관한 규정
-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 ▶ 시간제 학생 등록제 운영에 관한 규정
- ▶ 주요 학사행정 안내

한남대학교 학칙

1983. 3. 1. 제정 1983.12.27. 변경 1984. 9.18. 변경 1985. 8.30. 변경 1986. 3. 1. 변경 1987. 3. 1. 변경 1987. 9. 1. 변경 1989. 5. 2. 변경 1990. 3. 1. 변경 1991. 5.14. 변경 1992. 3. 1. 변경 1992. 5.18. 변경 1993. 3.31. 변경 1993. 9. 1. 변경 1994. 2.21. 변경 1994.12.13. 변경 1996. 3. 1. 변경 1996.11.20. 변경 1997. 3. 1. 변경 1998. 3. 1. 변경 1998. 6. 1. 변경 1999. 3. 1. 변경 1999. 7.28. 변경 1999.11. 1. 변경 2000. 2. 1. 변경 2001. 3. 1. 변경 2002. 1. 3. 변경 2002. 3. 1. 변경 2003. 3. 1. 변경 2003. 9. 1. 변경 2003.10.17. 변경 2004. 3. 1. 변경 2004. 6. 8. 변경 2004. 6.15. 변경 2004. 8.10. 변경 2004.10. 5. 변경 2004.11. 2. 변경 2004.12. 1. 변경 2005. 2. 4. 변경 2005. 2.23. 변경 2005. 4.26. 변경 2005. 8.23. 변경 2005.10.18. 변경 2005.12.27. 변경 2006. 2. 6. 변경 2006. 3.21. 변경 2006. 4.25. 변경 2006. 5.23. 변경 2006. 9.26. 변경 2006.11.28. 변경 2007. 3. 1. 변경 2007. 9. 1. 변경 2007.12.12. 변경 2008.10. 1. 변경 2008.10. 9. 변경 2009. 1.19. 변경 2009. 9. 8. 변경 2011. 2. 8. 변경 2010. 9.28. 변경 2011. 1.13. 변경 2011. 5.11. 변경 2011. 9. 6. 변경 2011.11. 8. 변경 2011.12. 6. 변경 2012. 4.10 변경 2012. 5. 9 변경 2012. 11. 15 변경 2012. 7.19 변경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과 목표) ①한남대학교는 진리·자유·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 ②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 를 세운다.
 -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기른다.

- 나. 인문적 소양과 미덕을 쌓아 건전한 문화를 창 출하다.
- 2.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 가. 고도산업기술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첨단 지식 및 기술을 갖춘다.
- 나. 국제사회에 대한 안목을 넓혀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다.
- 다.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 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다.
- 3.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 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 사하다.
- 나.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지도자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함양한다. (개정 2004.12.1)
- 제 2 조(편제) 본 대학교에 문과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경상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조형예술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생명·나노과학대학, 교양융복합대학, 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학제신학대학원, 행정복지대학원 및 국방전략대학원을 두며, 사범대에는 교육연수원 및 공과대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개정 2003. 3. 1, 2004. 6. 8, 2004. 10. 5, 2005. 2. 4, 2005. 4. 26, 2005. 10. 18, 2006. 2. 6, 2007.9.26, 2009. 9. 8, 2011. 9. 6, 2012. 4. 10)
- 제 3 조(학생정원) 각 대학의 편성학과(부) 및 학과(부) 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 4 조(대학원) 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학제신학대학원, 행정복지대학원, 국방 전략대학원에 대한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4.6.8, 2005.2.4, 2005.4.26, 2006.2.6)
- 제 5 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과 연구소를 두고, 각 기관과 연구소 에 필요한 세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 1. 부속기관: 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신문방송국, 인돈학술원, 기독교문화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원,

평생교육원, 출판부, BK21사업단, 생활관 (개정 2003. 9. 1, 2003. 10. 17, 2005. 2. 4, 2005. 12. 27, 2009. 9. 8, 2011. 9. 6, 2012. 5. 9)

- 2. (삭제 2004. 2. 4)
- 3. 부설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교육연구소, 자연 과학연구소,산업기술연구소, 경영연구소, 경제연구 소, 사회과학연구소, 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 국 방M&S연구센터(개정 2003. 10. 17, 2004. 8. 10, 2009. 9. 8)
- 제 5 조의 2(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본교는 총장 산하 기구로 법인격을 가진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두 고, 필요한 정관과 세칙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3. 9. 1)

제 2 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 제 6 조(수업년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년한은 4년(건축학 전공은 5년)으로 한다. 단,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3. 3.1)
 - ②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수업년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1)
- 제 7 조(재학년한) ①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2배를 초과 하지 못한다.
 - ②편입학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해당학과 전과정을 이수 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 8 조①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이를 제 1학기와 제 2학기로 나눈다. (개 정 2006. 9. 26)
 - 1. (삭제 2006. 9. 26)
 - 2. (삭제 2006. 9. 26)
 - ②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기

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계절학기의 취득 학점은 9 학점 범위 내로 한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계열 및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소 속 학생은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을 8학점 범위 내로 한다. 수강할 수 있는 지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 수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로 한다. (개정 2011, 2, 8)

- 제 9 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수 있다.
- 제 10 조(정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하계방학
 - 2. 동계방학
 - 3. 개교기념일
 - 4. 일요일
 - 5. 기타 법정공휴일
- 제 11 조(임시휴업일) ①입학시험,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제10조의 휴업일 외에도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②비상사태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9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에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이나 실습을 할수 있다.

제 4 장 입 학

- 제 12 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시기 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 13 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 제 14 조(제출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 접

- 수시 다음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기타 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 15 조(입학전형) ①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2, 3학년 편입학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단,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6 조(입학절차)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이 요 구하는 각종 서류와 입학금 기타의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②제1항의 절차를 이유 없이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제 17 조(편입학) ①본 대학교의 제2, 3학년에 편입할수 있는 자는 대학의 전급학기 이상을 수료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 ②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 단, 그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어야 하고 또한 3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 한하다.
- 제 18 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적당시의 동일 학과/전공의 동 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2, 7, 19)
 - ②삭제 (2001.3.1)
- ③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9)

- ④제47조(징계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게는 제적된 날로부터 1 년 이상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9)
 - ⑤제1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 (개정 2012. 7. 19)

제 5 장 전공배정, 전공변경(전과), 휴학, 복학, 자퇴, 제적

- 제 19 조(전공배정)①전공배정은 1학년 2학기말에 소속 학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 행한다. (개정 2011. 2. 8. 2012. 4. 10)
 - ②전공배정 신청, 기준, 인원 산정에 관한 세칙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조의 2 (전공변경(전과))

- ①전공변경(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를 이수하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변 경(전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 2011. 2. 8)
- ②삭제 (2000.2.1)
- ③전공변경(전과)한 자는 해당학과(부)의 소정의 학 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④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20 조(휴학) ①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휴학원에 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휴학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된다.(개정 2008.10.9, 개정 2009.9.1)
 - ③병역으로 인한 휴학과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항 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1학년 2학기를 수료한 지는 휴학 전에 전공 지망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 21 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복학 해야 할 학기초 등록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제 22 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23 조(제적)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2.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포함)
 - 4. 재학년한 내에 졸업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5. 자퇴한 자
 - 6. <삭제 2009.9.1 개정>
 - 7.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 8. 2학기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국제교류유 학생 제외) (신설 2011. 2. 8)

제 6 장 교과와 이수, 수업, 수료

제 1 절 교육과정과 이수

- 제 24 조(교과구분) 본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부전공과목, 복수전공과목, 교직과목, 다전공과목 등으로 추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교과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 3. 1)
- 제 25 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 제 26 조(이수단위)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교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②R.O.T.C.학생의 경우에는 제3학년 및 제4학년에서 이수하는 군사학을 한 학기당 3학점씩 총 12학점 을 인정한다.(개정 2002. 3. 1)

- ③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학과(부)에서 반드시 제 1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본 대학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④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느 특정한 전공 교과 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선택 이수 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 한다.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 다.
 - ⑤다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⑥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3. 1)

제 2 절 수업 및 이수학점

- 제 27 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개강 전에 총장이 이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 제 28 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소정 절차를 완료치 못한 자는 수업을 받을 수 없다.
 -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29 조(이수학점)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 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계열 및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은 매 학기 17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성적우수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이수 할 수 있다.(개정 2011. 2. 8)
- 제 30 조(학점교류) ①본교와 협정관계에 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정부나 국가 기관 등에서 파견하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35 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 6. 8)
 - ②본교 학생은 대학원(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4학년 학생에 한하며, 학기당 3학점

까지 인정한다.

- 제 30 조의 2 (국내외 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07. 9. 1 개 정)
- 제 31 조(계절학기수업) 소정학기 외에 계절학기 수업을 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2 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재 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한 후 본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 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를 따 로 정한다.
- 제 33 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종 전에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학점을 재 사정하 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기타 세부사 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절 수 료

제 34 조(수료학점인정)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 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3. 1, 2003. 3. 1, 2007. 09. 01, 2011. 2. 8)

졸업 학점 수료 학년	128학점	135학점	136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165학점
1학년	32학점	34학점	34학점	35학점	37학점	32학점	33학점
2학년	64학점	68학점	68학점	70학점	75학점	64학점	66학점
3학년	96학점	102학점	102학점	105학점	112학점	96학점	99학점
4학년	128학점	135학점	136학점	140학점	150학점	128학점	132학점
5학년						160학점	165학점

제 7 장 시험과 성적

- 제 35 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 간시험, 학기말시험을 행하며, 그 외의 시험도 부 과할 수 있다.

- 에 출석하여야 한다.
- ②교과목당 결석일수가 그 학기 총 수업시간의 3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 ③제2항에서 정한 결석 허용 한계를 초과한 학생 의 해당교과목 성적을 과목낙제로 처리한다.
- 제 37 조(추가시험) 병역,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전에 추가시 험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항 력으로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성적은 B+ 급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38 조(특별학점 인정)학점취득 특별시험과 특별학점 인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개정 2003. 3. 1) ①학점취득 특별시험은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 시하며, 시험에 합격한 과목은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으로 인정하고 당해 과목의 수강은 면제 하다
 - ②자격증 및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성적을 본교 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기타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39 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 으로 하고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 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 40 조(성적분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실 점	평 점	등급	실 점	평 점
A+	97 - 100	4.5	C+	77 - 79	2.5
A0	94 - 96	4.3	C0	74 - 76	2.3
A-	90 - 93	4.0	C-	70 - 73	2.0
B^{+}	87 - 89	3.5	D+	67 - 69	1.5
В0	84 - 86	3.3	D0	64 - 66	1.3
В-	80 - 83	3.0	D-	60 - 63	1.0
			F	0 - 59	0.0(낙제)

제8 장 졸업 및 학위

제 36 조(출석) ①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 제 41 조(졸업)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3. 1, 2003. 3. 1, 2006. 9 26, 2011. 2. 8, 2012. 4. 10, 2012. 7. 19)

【 졸업학점 기준표 】

구 분	2002~2005년 입학생	2006~2010년 입학생	2011년 이후 입학생
인문시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140학점	136학점	128학점
공학·이학·예체능	140학점	140학점	136학점
시범계열	140학점	140학점	135학점
건축학전공	165학점	165학점	160학점

- ③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전체 평점평균 2.00 이상 이어야 한다. 단, 학칙 제6조의 단서에 의하여 조 기졸업 할 수 있는 자는 전항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평점평균이 4.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 2, 8, 2012, 7, 19)
- ④입학정원 외의 졸업대상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사편입자, 농어촌학생, 군위탁생, 특수교육대상 자로 한다. (개정 2003. 3. 1, 2011. 2. 8, 2012. 7. 19)
- ⑤졸업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하되 후기졸업 대상 은 조기졸업,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을 등록하고 1학기말에 졸업의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개정 2007. 3. 1, 2011. 2. 8, 2012. 7. 19)
- ⑥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학생에 대한 졸업요건 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 2, 8, 2012, 7, 19)
- ⑦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1. 2. 8. 2012. 7. 19)
- 제 42 조(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졸업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부)에서는 총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전임교수의 사정을 거쳐 판정한다.
 - ⑤실기발표(작품발표)의 경우는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으로 전임교수 2명 이 상을 위촉하여 실시케하고, 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 ⑥다전공자는 제1전공 및 제2,3전공의 졸업논문(종 합시험 또는 졸업작품)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⑦졸업논문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증명서만 교부할 수 있다.
- ⑧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차후 심사 기간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⑨졸업논문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 한다.
- 제 42 조의 2(졸업유보) 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한 자가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졸업을 유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 로 정한다.(신설 2011. 2. 8)
- 제 43 조(학위)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 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1에 의하여 별표2의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다전공 학생은 제1전공과 동일한 학위증서번호로 제2,3전공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9 장 포상과 징계

- 제 44 조(포상) 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 정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제 45 조(수강신청 학점제한)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 균이 1.50미만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에 학점을 제한한다. 수강신청 학점제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6 조(학사경고) ①학기당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과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단, 국제교류유학생 예외)은 학사경고를 받 는다.(개정 2009. 9. 1, 2011. 2. 8)
 - ②제1항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부과하는 경우 교무 연구처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 강신청시 15학점(2011년 이전 입학자는 16학점) 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 2. 8)
- 제 47 조(징계처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장 또는 학

생특별지도위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처분을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3. 학업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4.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 10 장 학생활동

- 제 48 조(학생회) ①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남대학교 총학생 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 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지된다.
 - ③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 자 할 때에는 학생인재개발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④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다.
- 제 49 조(학생임원 자격기준) (삭제 2006.4.25)
- 제 49 조 1① 학생자치기구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009.1.19 조 신설).
 - 1. 4학기 이상(68학점이상 이수예정자) 6학기 이내 (102학점이상 이수예정자. 단,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 132학점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다만,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이내(119학점이상 이수예정자. 단, 건축학전공은 9학기이내, 149학점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단, 2011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은 4학기이상(64학점 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다만,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이내 (112학점 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 (개정 2011. 2. 8) (개정 2011. 11. 8)
- 2. 성적이 전체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 3. 형사처벌(금고이상)을 받거나,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②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①항 제2호 또는 제3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 실한다.
- 제 50 조(학생지도위원회) ①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와 단 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특별지도위원회를 둔다.(2009.1.19 개정)
 - ② (삭제 2009.1.19 개정)
 - ③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 학생상벌, 학생과 관련한 학칙사항,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심의한다.(2009.1.19 개정)
 - ④학생지도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2009.1.19 항 신설)
- 제 51 조(학생특별지도위원회) ①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2개 대학 이상의 학생이 관련된 경우 대학간 조정 및 원활한 지도를 위하여 학생특별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학생특별지도위원회 구성은 따로 정한다.
- 제 52 조(학생경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 53 조(학생지도) 총장 또는 학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 54 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 와 본교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 제 55 조(집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다른 대학(교)과의 연합행사
-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제 56 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납입금

- 제 57 조(입학금)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8 조(납입금)①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시 소정기일 내에 납입금과,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없이 전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 적된다.
 - ②실험실습, 실기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따로 징수하다.
 - ③다전공 학생의 제1전공과 제2,3전공의 계열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계열별 등록금의 차액을 지수한다.
 - ④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하다.
 - ⑤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는 반화하지 아니한다.
- ⑥납입금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9 조(기성회비 등) 삭 제

제 12 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 제 60 조(위탁생) 위탁생은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락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 한다.
- 제 61 조(외국인학생) ①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학입 학(편입학 포함) 자격을 갖추고 입학(편입학 포

- 함)을 원할 때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정원 외로 30%까지 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칼리지는 입학정원의 100%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5.11)
- ② 외국인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학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1)
- ③ 삭제 (2011. 5. 11)
- 제 62 조(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3 장 장학금

- 제 63 조(장학금) ①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특기자, 국가유 공자 및 그 직계자녀, 교직원 직계자녀, 교육자 직 계자녀, 교역자 직계자녀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 다.
 -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 14 장 직 제

- 제 64 조(직제) ①본 대학교에 총장 외에 다음 같은 교원과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단, 모든 교직원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한다. (2002. 3.1 개정)
 - 1.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 2. 직원 : 참여, 부참여, 참사, 부참사, 주사, 부 주사, 서기, 부서기
 - ②제1항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와 임 시서기를 둘 수 있다.
 - ③본 대학교의 각 대학에 학장과 대학원에 원장을

한다. 다만,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비정년계열로 협동대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교무위원중에서 경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 8. 23)

④본 대학교의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교수회

- 제 65 조(구성)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 를 둔다.
 - 1. 교수회는 전체 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로 나는 다.
 - 2.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단, 총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임강사 및 해당 직원을 출석케 할 수 있다.
 - 3.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교수회는 학장이 소집 하며, 그 의장이 된다. 총장은 대학별 교 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제 66 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특별한 자문에 응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도 있다. (개정 2006. 9. 26)
 - 1. 입학에 관한 사항
 -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16 장 교원

- 제 67 조(특별임용교원) ①본 대학교에 특별임용교원을 둘 수 있다.
 - ②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 제 68 조(명예교수) ①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다
 - ②명예교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69 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두고 교수로서 겸무하고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 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경우 협동학장 또는 제 69 조의 2(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 법 제53조의 2 규정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신설 2005. 2. 23)

제 17 장 교무위원회

- 제 70 조(설치 및 구성) 본 대학교의 교육, 연구 및 운 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 워회를 둔다.
 - ①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목실 장, 각 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한다.
 - ②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71 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다.
 - 1. 대학, 대학원, 학과 및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3.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 4.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5.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 6. 대학입학 추가모집, 편입학 및 재입학 사정
 -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72 조(각종 위원회) ①본 대학교의 특별목적을 구현 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부설로 특별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 ②특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 18 장 특별과정

- 제 73 조(설치 및 시행) ①본 대학교의 특별목적을 구현 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부설로 특별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 ②특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 19 장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가상대학, 학점은행제, 해외복수학위과정

- 제 74 조(공개강좌) 본 대학교는 직무, 교양연수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 는 자를 널리 지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제 75 조(공개강좌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수강료 징수, 기타에 관한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76 조(시간제등록) ①본 대학교는 열린교육 또는 평 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둘 수 있다.
 - ②시간제 학생의 선발방법, 선발인원 및 이수학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76 조의 2(학점은행제)①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와 전공이유사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교양30학점이상, 전공60학점이상, 총 14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그 중에서 84학점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되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의한 심의를 거쳐 총장은 별도서식(2)에 의하여해당 학위를 수여할수 있다.(신설 2003. 9. 1)(개정 2005. 8. 23)
 - ②학점은행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3. 9. 1)
- 제 76 조의 3(해외복수학위과정) 해외자매대학과의 협약을 통하여 해외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자격, 이수학점, 학점인정, 학위수여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3.1)
- 제 77 조(가상대학) ①본 대학교는 가상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②가상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장 학교기업

(신설 2004, 6.15)

- 제 78 조(학교기업 설치) ①학교에 산업교육진홍및산학 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한남대학교 린튼바이오 학교기업'(이 하 '린튼바이오 학교기업')이라 한다.
 - ②린튼바이오 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에 설치한다.
 - ③린튼바이오 학교기업은 생명나노과학부 생명공학 전공과 연계하여 '친환경생명공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한다.(개정 2005. 10. 18, 2006. 11. 28)
- 제 79 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린튼바이오 학교기업 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총 12학 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②현장실습교육을 30시간 이수한 경우를 1학점으로 인정하다.
 - ③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 80 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①학교기업 운영성과 발생시 순이익의 4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 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 총액을 넘을 수 없 다.
 -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 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④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21 장 보칙

- 제 81 조(학칙가)정절차 본 학칙의 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2. 5. 9)
- 제 82 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3 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숭전대학교 대전분교에 입학하여 재적하는 학생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남대학의 해당 소속학과 재적생 으로 본다. 단, 1982학년도 이전에 외국어교육과에 입학 및 전공학과를 배정 받은 학생으로서 학적변 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83학년도 이후 입 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영어교육 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단, 변경학칙 중 제42조 ①항은 1984학년도 입학생부 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4학년 9월 18일부터 시행 한다.
- ②(경과조치) 1983학년도 이전에 수학과(야간강좌 개설 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칙변동(복학)으로 인하 여 1984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 는 전자계산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 및 수학과(주간) 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한남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한남대학교의 각 대학 해당 학과, 해당 학년에 1986년 3월 1일자로 편입한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중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42조 본문 및 제1항의 변경사항은 1986학년도 법학과 입학자부터 적용하다.

부 칙

- ①(시행일)이 변경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 1. 미술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 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다.
 - 2. 가정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 까지의 졸 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다.
 - 3. 수학과의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 까지의 졸업정 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20명으로 한다.
 - 4. 물리학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 까지의 졸업 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명으로 한다.
 - 5. 화학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 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명으로 한다.
 - 6. 상업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 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 제33조, 제35조 및 제42조 제②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하며, 졸업정원제도로 입학한 학생 중 미등록학사경고 및 휴학기간 초과로 인한 제적자는 이 변경 학칙 제18조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88학년도 이전에 전자계산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89학년 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 자계산공학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에 도서관학과로 입학한학생 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91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문헌정보학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 3항 제4호에 해당되는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8조 및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 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1995학년도 이전에 상업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95학년

- 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자는 경영정보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 2.1995학년도 이전 경영학과, 회계학과 입학생중 학적 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 1996학년도 이후 입학 생과 같이 졸업하는 자는 변경된 학칙에 의한 경영학 부(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1월20일부터 시행하 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 전에 제적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전자계산공학과, 토 목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각각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0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1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는 "자연과학부"로,
 - 나. 경상대학 "중국학과"와 "경제학과"는 "중국·경제학부"로 본다.
 - 2. 1997학년도 이전에 가정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은 가 정교육과로 졸업할 수 있다.
 - 3.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사회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활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 4. 이 학칙 변경 당시의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경영학부(회계학전공)에 재적하고있는 자는 각각 경영학과, 회계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1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2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문헌정보학과"는 "인 문학부"로
 - 나.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는 "영 일어문학부"로
 - 다.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는 "유 럽어문학부"로
 - 라. 문과대학 "철학과"와 "사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 는 "역사철학부로"로 단,1998학년도 이전에 사학 과(야간강좌 개설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 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1999학년 이후 입학 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역사철학부에 재 적하는 자로 본다.
 - 마. 문과대학 "응용미술과"와 "회화과"는 "미술.조형디 자인학부"로
 - 바. 이과대학 "식품영학학과"와 "의류학과"는 "응용과학부"로
 - 사.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와 "정보 통신공학과"는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로
 - 아.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와 "토목환경공학과"는 "건 축.토목환경공학부"로
 - 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와 "기계공학과"는 "산업.기 계공학부"로
 - 차.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와 이과대학 "고분자학과" 는 "화공.고분자공학부"로 단,1998학년도 이전에 고분자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99학년 이후 입학생과 졸업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화공.고분자학부에 재적하 는 자로 본다.
 - 카. 경상대학 "경영학과"와 "회계학과"와 "무역학과와 "경영정보학과"는 "경영학부"로
 - 타. 경상대학 "응용통계학과"는 "중국.경제학부"로

- 파.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와 경 상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는"사회과학부"로
- 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야간강좌개설학과)"와 "이동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부"로 단,1998학년도 이전에 사회복지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 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 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 거. 경영학부 창업전공과 중국.경제학부 하이테크산업 전공, 사회과학부 광고홍보학전공은다전공시 제2전 공 이상로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변경 당시의 하이테크산업전공을 다전공하고 있는 자는 하이테크비즈니스를 다전공 하 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전공 배정 결과는 이 변경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학칙중 제19조의 2는 2001학년도부 터 시행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의 전 과(부) 시기는 변경 전 학칙(제2,3학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기초에 전과 [부] 신청)을 적용한다.
 - 2. 제58조 제3항은 2000학년도 1학기 다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2학기까지다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다.
 - 3. 학부로 통합되는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와 멀티미디 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2학년도까지 입학 당시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3학년도 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4.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역사철학부, 미술·조형디자인 학부, 산업기계공학부, 중국·경제 학부, 사회과학부 (지역 개발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지는 각각 역사·철학부, 조 형예술학부, 산업공·기계공학부, 중국·경제·정보통계학

부, 사회과학부(도시·지역계획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1999학년도 이전에 역사철학부,미술·조형디자인학부, 산업기계공학부, 중국·경제학부, 사회과학부(지역개발학전공)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학생에 대하여는 역사·철학부, 조형예술학부, 산업공·기계공학부,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학칙 변경 당시의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과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19조의2의 2호는 1999학년도 입학자 와 2002학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2. 문과대학 "인문학부"를 "국어국문학부"와 "문헌정 보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인문 학부"로 입학 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 는 "국어국문학부"와 "문헌정보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 대로 배정할 수 있다.
 - 3. 문과대학 "영·일어문학부"를 "영어영문학부", 일어 일문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영·일어문학부 "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영어영문학부"와 "일어일문학과"에 재적하 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 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 할 수 있다.
 - 4. 이과대학 "응용과학부"를 "식품영양학과"와 "의류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응용과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식품영양학과"와 "의류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

- 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5. 공과대학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에 "전자정 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을 두고, 2001년도 이전에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 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자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 티미디어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2001년도 이전의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에 재적하던 학 생이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변 경 된 학부의 전공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고,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에 재적하던 학생이 동 일 전공으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컴퓨터 공학전공"과 "멀티미디어전공"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 6. 이 학칙 변경 당시 공과대학 산업공·기계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산업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산업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1년도 이전에 "산업공·기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 7. 경상대학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를 "중국·경제학부"와 "정보통계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 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중국·경제학부"와 "정보통계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8. 이 학칙변경 당시 사회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사회·아동복지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 9.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부"를 "사회과학부"와 "여성 경찰행정학과"로 하고, 이 학칙 변경당시 "여성경찰행 정학전공"을 모집단위로 입학한 자는 "여성경찰행정학 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 10. 제26조의제2항은 2002학년도부터 4학년에게도 변

경된 학점을 적용하며, 제34조와 제41조는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3학년도 대학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가 변경된 건축·토목환경공학부(건축공학전 공, 토목환경공학전공)의 경우 해당 입학연도 입학생 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복 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당해 모집단위가 없을 때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건축학부 또는 토목환경공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하여야 한다. 단, 건축·토목환경공 학부 재적생(전공미배정자)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인 건축학부(건축학전 공, 건축공학전공) 또는 토목환경공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이 변경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 당시 "유럽어문학부(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유럽어문학부(프랑스어문학전공, 독일어문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학년도 이전에 "유럽어문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 2. 이 학칙 변경 당시 "화공·고분자공학부(화학공학 전공, 고분자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 화공정보신소재공학부(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생명정 보신소재공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학 년도 이전에"화공·고분자공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

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 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3. 이 학칙변경 당시 "법학부(지적재산권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법학부(특허법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학년도 이전에 "법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 당시 학부에서 학과로 되는, 다음의 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은 2007학년도 까지는 동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8학년도부터는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04학년도이전 입학생으로서 학적변동으로 동일학부로 복학,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 재입학 한다.
 - 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과 "문예창 작전공(야)"은 각각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문 예창작학과"로
 - 나. 문과대학 역사·철학부 "사학전공"과 "철학전공"은 각각 문과대학 "사학과"와 "철학과"로
 - 다.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과 "미생 물학전공"은 각각 이과대학 "광· 전자물리학과"와 "생명공학과"로
 - 라. 공과대학 생명화공정보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 공학전공"과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 은 각각 공 과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와 "생명정보신소재공

학과"로

- 마.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에서 "산업시스템 공학전공(야)"을 폐과하여 "산업시스템공학전공"과 "기계공학전공"은 각각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 과" 와 "기계공학과" 로
- 바.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경영학전공 (야)", "회계학전공(야)", "국제통상학전공(야)"은 각각 경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통상학 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야)", "회계학과 (야)", "국제통상학과(야)"로
- 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언론· 국제학전공", "도시·지역계획전공", "행정학전공 (야)"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언 론·국제학과", "도시부동산학과", "행정학과(야)로
- 2. 이 학칙 변경 당시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동일 학부에 재적하는 자 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영어영문학부(아동영어학전 공(야))으로 복학, 재입학 한다.
- 3. 이 학칙 변경 당시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회 화전공",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에 재적하고 있 는 자는, 각각 신설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회화과", "디자인학과(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학적변 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회화과", "디자인학과 (야)로 복학, 재입학 한다.
- 4. 이 학칙 변경 당시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전 자정보통신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동일학부에 재 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동 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 부 전공(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복학, 재입학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4년도에 실시되는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는 현행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다.
- 2.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 학부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된 재적생은 소속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대학 학부(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	05학년도 편제	2	006학년도 편제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대학명	학부 및 학과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이과대학	수학과
	자연과학부 화학전공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화학전공
	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생명공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공과대학	정보통산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정보통산: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전공	공과대학	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신소재공학전공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상대학	무역학과
	중국·경제학부 중국전공	경상대학	중국통상경제학부(중국통상전공, 경제전공)
사회과학대학	여성경찰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	린튼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

② 또한 2005학년도에 학부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된 재적생도 2005학년도 편제명칭으로 소속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학부(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04학년도 편제)5학년도 편제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전공	문과대학	문예창작학과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문과대학	철학과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문과대학	사학과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	이과대학	광전자물리학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경상대학	회계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사회과학부 정치언론국제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정치언론-국제학과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전공	사회과학대학	도시부동산학과

102 2013 한남대학교 요람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야간강좌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재적생이 학적변 동(복학)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동일학부(전공), 동일학과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폐지년도	학과(전공)명	주간으로 소속변경 대상자
2002	기계공학과(야)	2005년 2월 이후 졸업하는 기계공학과(야) 학생
2005	산업경영공학과(야)	2008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산업경영공학과(야) 학생
2006	컴퓨터공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컴퓨터공학과(야) 학생
2006	회계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회계학과(야) 학생
2006	무역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무역학과(야) 학생
2006	법학부 법학전공(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법학부 법학전공(야) 학생

- 2.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제적생은 동일학과 주간강좌로 재입학할 수 있다.
- 3. (주·야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문예창 작학과(야)의 2004년도 이전 입학생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8년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 은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과 주간으로 학 적을 변경할 수 있다.
- 4. 2005년 명칭 변경된 영어영문학부(아동영어학전공 (야))의 재적생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 부(전공)명 또는 변경된 학부(전공)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 다.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②(경과조치) 1. (야간강좌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재적생은 입학정 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시 다음 과 같이 동일학부(전공), 동일학과 주간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로는 재입 학을 할 수 없다.

폐지년도	학과(전공)명	주간으로 학적변동 대상자
2007	경영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경영학과(야) 학생
2007	행정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행정학과(야) 학생
2007	사회복지학전공(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사회복지학전공(야) 학생
2007	디자인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디자인학과(야) 학생

- 2. (주·야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아동영 어학전공(야)의 2006년도 이전 입학생중 학적변동(복 학, 재입학)으로 2010년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 생들은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과 주간으 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 3. (학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①사회과학대학의 "사회·아동복지학부"를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복지학과"로 학과전환을 하고 2006년도이전에 "사회·아동복지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복지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 ②생명·나노과학대학의 "바이오과학부"를 "생명과학과" 와 "식품영양학과"로 학과전환하고 2006년도 이전에 "생명·나노과학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 (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명·나노과학대학"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복학(재입학)할 경우는 분리된 학부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4. (학부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의 "나노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나노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②(학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생명·나노과학대학의 "생명나노과학부"를 "생명공학과" "화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신소 재공학과"로 학과전환을 하고 2007년도 이전에 "생명나노과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8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명공학과" "화학과""나노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토목환경공학과", "정보통계학과"에 재적 하고 있는 자는 "건설시스템공학과", "비즈니스통계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8학년도 이전에 "토목환경공학과", "정보통계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과로 복학, 재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②(경과조치) 신설규정 제 49조의 1은 2009년 9월 1일

104 2013 한남대학교 요람

이후 시행되는 학생자치기구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유럽어문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프랑스어문화학과" 또는 "독일어문학과", "중국통상·경제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중국 통상학과" 또는 "경제학과", "컨벤션산업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컨벤션경영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자로본다. 단, 2009학년도 이전에 "유럽어문학부", "중국통상·경제학부", "컨벤션산업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과)로 복학, 재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1. 이 변경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하다.

2. 단, 별표 1 중 2010, 2011학년도 간호학과의 간호계 열 편입에 대한 규정개정은 2010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프랑스어문화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프랑스어문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10학년도 이전에"프랑스어문화학과"로 입학 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 (과)로 복학, 재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과 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연계전공 주관부서 변경) 정치언론·국제학과 주관 연계전공인 "광고·홍보학전공"의 주관부서를 교양융복 합대학으로 변경한다.

③(연계전공 폐지) 경영학과 주관 연계전공인 "창업전 공"과 경제학과 주관 연계전공인 "하이테크비즈니스전 공"을 폐지하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단위가 변경된 "생명과학과"와"생명공학과"의 경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당해 모집단위가 없을 때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생명시스템과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학부제 유지 하에 전공별 모집을 하는 건축학부의 경우 전공배정 전에 휴학한"건축학부"소속인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건축공학전 공"과"건축학전공"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 명칭이 변경된 재적생은 소속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대학 학부(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11호	년도 편제	2012호	학년도 편제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대학명	학부 및 학과
	수학과		디자인학과
 	광·전자물리학과	그 처세스리치.	회화과
이과대학	의류학과	조형예술대학	예술문화학과
	생활체육학과		의류학과
	디자인학과		생명시스템과학과
미술대학	회회과		식품영양학과
	예술문화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나노	
	생명공학과	과학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나노	화학과		신소재공학과
과학대학	간호학과		수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광·전지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생활체육학과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②(경과조치) 생명·나노과학대학 광·전자물리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광·전자물리학과의 존속은 2015학년도까지로 한다.
 - 2. 광·전자물리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 입학할 시에는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광·전자물리학과의 해당학년으로,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광·센서공학 과 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의 해당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별표 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개정 2008.10.1, 2011.1.28, 2011.12.6, 2012.4.10, 2012.11.15)

대학	계열	1990년	1991년	비고
	소계	440	440	
문과 대학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도서관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91년 명칭변경 90년 학과 신설
	예능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소계	220	220	
사범 대학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학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소계	400	440	
이과대학	이학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90년 학과 신설 91년 학과 신설
	체육	사회체육학과 40	사회체육과 40	90년 학과 신설
	소계	320	320	
공과 대학	궁하	전자계산공학과 9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50	전자계산공학과 9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학과 50	
	소계	390	390	
경상 대학	인문 사회	경영학과 10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경영학과 10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소계	160	160	
법정 대학	인문 사회	법학과 80 행정학과 40 정치외교학과 40	법학과 80 행정학과 40 정치외교학과 40	
총	계	1,930	1,970	

대학	계열	1992년	1993년	비고
	소계	440	520<40>	
문과	인 문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아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93년 정원 분할 93년 야간강좌 신설
대학	사 회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야간> 40	93년 야간 학과 신설
	예 능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소계	220	220	
사 범 대 학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학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소계	440	440	
이과대학	이학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5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4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체육	고분자학과 40 사회체육과 40	고분자학과 40 사회체육과 40	
	소계	7년의세탁가 40 320	사외제퓩과 40 450<90>	
공 과 대 학	공 학	전자계산공학과 9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학과 50	전자계산공학과 90 전자계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학과 5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03년 야간 강좌 신설 93년 학과 신설 93년 야간 학과 신설
	소계	390	520<130>	
경상	인 문	경영학과 10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40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무역학과 40	93년 야간 강좌 신설 93년 야간 강좌 신설
대학	사 회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93년 야간 강좌 신설
	소계	160	280<120>	
법 정 대 학	인 문 사 회	법학과 80 행정학과 40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	93년 야간 강좌 신설 93년 야간 강좌 신설
총	<u></u> 계	정치외교학과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40	93년 야간 학과 신설
उ	Al	1,970	2,430<380>	

대학	계열	1994년	1995년	비고
	소계	480<80>	520<80>	
문과대학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천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영어영문학과<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야간> 40	95년 40명 증원
	예능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95년 전공분할 모집
	소계	220	220	
사범 대학	인 문 사 회 예 능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미술교육과 3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미술교육과 30	
	이 학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소계	440	440	
이과대학	이학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체능	사회체육학과 40	사회체육학과 40	
	소계	450<90>	450<90>	
공 과 대 학	공 학	전자계산공학과 90 전자계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5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전자계산공학과 90 전자계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5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소계	520<130>	520<130>	
경상 대학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소계	280<120>	280<120>	
법정대학	인 문 사 회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40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40	
총	계	2,430<420>	2,470<420>	

대학	계열	1996년	1997년	비고
	소계	520<80>	520<80>	
문 과 대 학	인 문회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영어영문학과<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야간> 40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영어영문학과<하라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돈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하라 40	
	예 능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소계	220	220	
사 범 대 학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학 소계	가정교육과 30 440	가정교육과 30 460	
이 과 대 학	이 학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5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50 고분자학과 50	97년 10명 증원 97년 10명 증원
	체 능	사회체육학과 40	사회체육학과 40	
	소계	490<90>	590<130>	
공 과 대 학	· 하	전자계산공학과 90 전자계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전차통신공학과 5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 40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환경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전화동학과 6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 40	97년 10명 증원 97년 20명 증원 96년 학과 신설 97년 학과 신설
	소계	520<130>	기계공학과<야간> 40 570<130>	97년 야간 강좌 신설
경 상 대 학	년 인사 인사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 (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 (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 40 경영정보학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 (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경영정보학과 40 경영정보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중국학과 40	96년명청변경/97년10명증원 97년 학과 신설
법과	소계	120<40>	130<40>	
대학	인 문 사 회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40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50	97년 10명 증원
	소계	160<80>	170<90>	96년 대학 신설
사 회 과 학 대 학	인 문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50	97년 10명 증원
합	계	2,470<420>	2,660<470>	

대학	계열	1998년	1999년	비고
	소계	560<80>	560<40>	
문과대학	인 문	국어국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영어영문학과<아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철학과 40 사학과<아간> 40 기독교학과 40	인문학부 8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헌정보학전공 (40) 영·일어문학부 16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전공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미술·조형디자인학부 공예·디자인전공 60	99년 학부 신설 99년 학부 신설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주간전환/99년소속변경 99년 학부 신설 98년 20명증원/99년소속변경
	, -	회화과(한국화/서양화) 6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60	98년 20명증원/99년소속변경
사 범 대 학	소계 인 문 사 회	19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19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학			98년 가정교육과 폐과
	소계	460	410	
이 과 대 학	이학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고분자학과 50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응용과학부 90 식품영양학전공 (50) 의류학전공 (40)	98년 학부 신설 98년 소속 변경 99년 명칭 변경 98년 소속 변경 98년 소속 변경 98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8년 소속 변경 98년 소속 변경 98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대학 변경(공대)
	체능	생활체육학과 40	생활체육학과 40	98년 명칭 변경
	소계	590<130>	640<130>	
		컴퓨터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야간> 5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 23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50) 전자공학전공 (60) 정보통신공학전공 (60)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공 과 대 학	상	건축공학과 6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기계공학과 60 기계공학과<야간> 40 화학공학과 60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 건축공학전공 (60) 토목환경공학전공 (60) 산업·기계공학부 180 산업공학전공 (40) 산업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야간> (40) 화공·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99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대학	계열	1998년	1999년	비고
멀티	소계	120	120	
미디 어 대학	공 학	멀티미디어학부 120 매체전공 (60) 비즈니스전공 (60)	멀티미디어학부 120 컨텐트전공 (60) 비즈니스전공 (60)	98년 학부 신설 98년전공신설/99년전공명칭변경 98년 전공 신설
	소계	570<130>	550<130>	
경 상 대 학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 <야간> 40 경영정보학과 40 중국・경제학부 80 경제학전공 (40) 중국학전공 (40) 응용통계학과 40 지역개발학과 40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 (10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 (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학부 140 경제전공 (50) 중국전공 (50) 정보통계전공 (40)	98년학부폐지/99년학부신설 98년학과독립/99년소속변경 98년학과독립/99년소속변경 98년학과독립/99년소속변경 98년학과독립/99년소속변경 98년학과독립/99년명칭변경 98년학과독립/99년명칭변경 98년학과독립/99년명칭변경 99년 소속변경 99년 10명 증원 99년 10명 증원 99년 명칭·소속 변경 99년 소속대학 변경(사회대)
	소계	160<60>	160<60>	
법과 대학	인 문 사 회	법학과 100 법학과<야간> 60	법학부 법학전공 (100) 법학전공<야간> (60)	99년 학부 신설 98년 20명증원/99년소속변경 99년 소속 변경
	소계	210<90>	280<80>	
사회 과학 대학	인 문 사 회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50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 · 국제학전공 (40) 지역개발학전공 (40) 사회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아동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 (40)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명칭 · 소속 변경 99년 명칭 · 소속 변경 99년 소속 대학 변경(경상)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8년 학과 신설 99년소속변경/99년10명감원
총	계	2,860<490>	2,910<440>	

대학	계열	2000년	2001년	비고
	소계	600<80>	600<80>	
문과대학	인 문 사 회	인문학부 12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헌정보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일어문학부 16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 (40) 일어일문학전공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인문학부 12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헌정보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일어문학부 16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 (40) 일어일문학전공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00년 신설
	예능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00년 학부 명칭 변경
	소계	190	190	
사범 대학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소계	430	430	
이 과 대 학	하 [.]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응용과학부 90 식품영양학전공 (50) 의류학전공 (40)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응용과학부 90 식품영양학전공 (50) 의류학전공 (40)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00년 20명 증원
	소계	760<130>	760<130>	
공 대학	공 학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 (18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 건축공학전공 (60) 토목환경공학전공 (60)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 (18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 건축공학전공 (60) 토목환경공학전공 (60)	00년 명칭 변경 00년 명칭·소속 변경 00년 명칭·소속 변경

대학	계열	2000년	2001년	비고
공 과 대 학	공 학	산업공·기계공학부 180 산업공학전공 (40) 산업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기계공학전공<야간> (40) 화공·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산업공 · 기계공학부 180 산업공학전공 (40) 산업공학전공 (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기계공학전공<야간> (40) 화공 · 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00년 명칭 변경 00년 멀티미디어학부 폐과
	소계	550<130>	550<130>	
경 상 대 학	인 문 사 회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14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전공 (40)	00년 학부 명칭 변경
	소계	160<40>	160<40>	
법과대학	인 문 사 회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법학전공<아간> (40) 지적재산권법학전공 (40)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법학전공<야간> (40) 지적재산권법학전공 (40)	00년 20명 감원 00년 20명 감원 00년 전공 신설
	소계	280<80>	310<80>	
사회 과학 대학	인 문 사 회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 · 국제학전공 (40) 도시 · 지역계획전공 (40) 사회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 (40) 아동복지학전공 (40)	사회과학부 19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40) 여성경찰행정학전공 (30) 사회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 (40) 아동복지학전공 (40)	01년 전공 신설
총	계	2,970<460>	3,000<460>	

대학	계열	2002년	2003년	
	소계	640<120>	640<120>	
문과대학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부 8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 · 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부 8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어영문학 12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식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02년 학부 명칭 변경 02년 학부 명칭 변경 02년 소속 변경 02년 소속 변경
	예 능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간> 40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디지털문화이벤트<야간> 40	02년 야간 전공 신설
	소계	190	190	
사 범 대 학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소계	430	430	
이 과 대학	이 학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명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식품영양학과 50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명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02년 응용과학부 폐지 02년 학과 독립
		의류학과 40	의류학과 40	02년 학과 독립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소계	720<90>	720<90>	
과 하 각 대	장	정보통신 · 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멀티미디어전공 (120) 건축 · 토목환경공학부 120 건축공학전공 (60) 토목환경공학전공 (60)	정보통신 · 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멀티미디어전공 (120) 건축학부 60 건축공학전공 (3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02년 컴퓨터멀티미디어 분리 02년 컴퓨터멀티미디어 분리 02년 컴퓨터멀티미디어 분리 03년 학부 분리 03년 전공 신설(5년제) 03년 학과 독립

대학	계열	2002년	2003년	
공 과 대학	공 학	산업시스템 · 기계공학부 1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 (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화공 · 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산업시스템 · 기계공학부 1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 (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화공 · 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02년 학부명칭 변경 02년 전공명칭 변경 02년 전공명칭 변경 02년 기계공학 야간 폐과
	소계	550<130>	550<130>	
경상대학	인 문 사 회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 (10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 · 경제학부 10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학과 40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 (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학부 10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학과 40	02년 학부 명칭·소속 변경 02년 학과 독립
	소계	160<40>	160<40>	
법과 대학	인 문 사 회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지적재산권법학전공 (40) 법학전공<야간> (60)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지적재산권법학전공 (40) 법학전공<야간> (60)	
	소계	310<80>	310<80>	
사회 과학 대학	인 문 사 회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40) 여성경찰행정학과 30 사회·아동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 (40) 아동복지학전공 (40)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여성경찰행정학과 30 사회·아동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40) 아동복지학전공 (40)	02년 학과 독립
총	계	3,000<460>	3,000<460>	

대학	계열	2004년	2005년	비고
	소계	640<120>	480<40>	
문과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부 8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80) 아동영어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05년 학부 폐지 05년 학과 독립 05년 주간변경 및 학과 독립 05년 학과신설 04년 학과명칭 변경
대학		독일어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04년 학과명칭 변경 05년 학부 폐지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예 능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간> 40		05년 학부폐지(대학신설) 05년 야간 전공 폐지
	소계	190	190	
사 범 대 학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소계	430	430	
이 과 대 학	이학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명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자연과학부 170 수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명과학전공 (50) 광·전자물리학과 60 생명공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05년 학부 조정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소계	720<90>	680<40>	
공 장 대	공 학	정보통신 · 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멀티미디어전공 (120) 건축학부 60 건축공학전공 (3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정보통신 · 멀티미디어공학부 340 전자공학전공 (60) 정보통신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40) 멀티미디어전공 (120) 건축학부 60 건축공학전공 (3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05년 학부 조정 05년 전공 분리 05년 전공 분리 05년 10명 감원

대학	계열	2004년	2005년	비고
공 과 대 학	아 하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1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 (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생명화공정보신소재공학부 110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60)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 (40)	산업시스템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50	05년 학부 폐지 05년 20명 증원 05년 야간 전공 폐지 04년학부명칭변경/05년학부폐지 04년전공명칭변경/05년학과독립04 년전공명칭변경/05년학과독립
	소계	550<130>	550<130>	
경상 대학	인문화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 (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 · 경제학부 10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학과 40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국제통상학과 40 국제통상학과<야간> 40 경영정보학과 40 중국 · 경제학부 10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학과 40	05년 학부 폐지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소계	160<40>	155<35>	
법과 대학	인 문 사 회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법학전공<야간> (40) 특허법학전공 (40)	법학부 155 법학전공 (80) 법학전공<야간> (35) 특허법학전공 (40)	05년 5명 감원
	소계	310<80>	310<80>	
사회학 대학	인 문 사 회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40) 여성경찰행정학과 30 사회·아동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 (40) 아동복지학전공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아간> 40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여성경찰행정학과 30 사회·아동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아간> (40) 아동복지학전공 (40)	05년 학부 폐지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명칭 변경
	소계		160<40>	05년 대학 신설
미술 대학	예능		디자인학과 60 디자인학과<야간> 4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05년 야간 학과 신설
글로	소계		45	
글로 벌 칼리 지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전공	05년 대학 및 학부 신설
총	계	3,000<460>	3,000<365>	

대학	계열	2006년	2007년	비고
	소계	480<30>	480	
문 대 하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야간>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06년 10명 증원 06년 10명 감원, 07년 주간 변경
	소계	190	190	
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06년 4명 감원 06년 4명 감원 06년 5명 감원 06년 4명 감원
	예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27	06년 3명 감원
	이 학		수학교육과 20	07년 학과 신설
	소계	210	210	
이 과 대 학	이 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06년 학부 폐지 06년 학과 독립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소계	530	520	
공과 대학	공 학	컴퓨터공학과 7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06년 학부 폐지 06년10증원,학과독립/07년10감원 06년 야간 전공 폐지 06년 학과 독립 06년 학과 독립 06년 학부 독립, 30명 감원 06년 10명 증원

대학	계열	2006년	2007년	비고
	소계	570<30>	575	_
경상 대학	인 문	경영학과 110 경영학과<아간> 3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0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정보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정보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06년 10명 증원/07년 30명 증원 06년 20명 감원/07년 야간 폐지 06년 야간 학과 폐지 06년 야간 학과 폐지 06년 10명 증원 06년 40명 증원, 명칭변경 06년 20명 증원 06년 20명 증원
	소계	155	155	
법과대학	인 문 사 회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06년 25명 증원 06년 야간 전공 폐지 06년 10명 증원
	소계	350<60>	340	
사회 과학 대학	인 문	행정학과 70 행정학과<야간> 30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아동복지학부 110 사회복지학전공(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30) 아동복지학전공(40)	행정학과 100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복지학과 40	06년 학부 폐지 06년 30명 증원/07년 30명 증원 06년 10명 감원/07년 야간 폐지 06년 30명 증원, 명칭 변경 06년 10명 감원/07년 학부 폐지 07년 20명증원, 학과 독립 06년 10명 감원/07년 야간 폐지
	소계	160<40>	175	
미술대학	예 능	디자인학과 60 디자인학과<야간> 4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디자인학과 95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07년 35명 증원 07년 야간 학과 폐지 07년 10명 감원 07년 학과 신설
글로	소계	45	45	
발 칼리 지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전공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07년 전공명칭 변경
	소계	310	310	06년 생명나노과학대학 신설
생 ・ 나 노 학	이 학 작 공	바이오과학부 150 생명과학전공 (50) 식품영양학전공 (50) 생명공학전공 (50) 나노과학부 160 화학전공 (60)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50) 신소재공학전공 (50)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나노과학부 210 생명공학전공 (50) 화학전공 (60)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50) 신소재공학전공 (50)	07년 바이오과학부 폐지 06년 이대 변경/07년 학과 독립 06년 이대 변경/07년 학과 독립 06년 이과대에서 변경 07년 학부 명칭 변경, 50명 증원 07년 바이오과학부에서 변경 06년 이과대에서 변경 06년 공대에서 변경 06년 공대에서 · 전공으로 변경
총	계	3,000<160>	3,000	

대학	계열	2008년	2009년	비고
	소계	480	480	
문 대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소계	190	190	
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예 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 학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과 20	
	소계	210	210	
이 과 대 학	이 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소계	520	520	
공 과 대 학	광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용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50) 미디어영상전공 (40)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09년 5명 증원(자체조정) 09년 5명 감원(자체조정) 09년 학과명칭 변경

대학	계열	2008년	2009년	비고
	소계	575	575	
경상 대학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정보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09년 학과명칭 변경
	소계	155	155	
법과 대학	인 문 사 회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소계	340	340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100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100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복지학과 40	
	소계	175	175	
미술대학	예 능	디자인학과 95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5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글로	소계	45	45	
^브 발 칼리 지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08년 전공명칭 변경
	소계	310	310	
생 · 나 가 학 대 학	이 학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08년 학부 폐지 08년 학과 독립 08년 학과 독립
	공 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08년 학과 독립 08년 학과 독립
총	계	3,000	3,000	

122 · 2013 한남대학교 요람

대학	계열	2009년	2010년	비고
	소계	480	480	
문과 대학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화학과 40 독일어문학과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2010년 학부제 유지하에 전공별 모집 2010년 학부제 폐지
	소계	190	190	
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예 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 학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과 20	
	소계	210	210	
이 과 대 학	이 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소계	520	520	
공 과 대 학	아 한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50) 미디어영상전공 (40)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신업경영공학과 60	2010년 학부제 유지 하에 전공별 모집 2010년 5명 감원(자체조정) 2010년 5명 증원(자체조정)

대학	계열	2009년	2010년	비고
	소계	575	575	
경상 대학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정보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2010년 학부제 폐지 2010년 학과명칭 변경
	소계	155	155	
법과 대학	인 문 사 회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소계	340	315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100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2010년 5명 감원 2010년 20명 감원
	소계	175	170	
미술 대학	예 능	디자인학과 95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2010년 5명 감원
글로	소계	45	50	
브 칼리 지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학부 50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25) 글로벌비즈니스전공(25)	2010년 5명 증원
	소계	310	335	
생명 • 나노 과학	이 학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대학	간 호		간호학과 25	2010년 학과 신설
	공 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총	계	3,000	3,000	

대학	계열	2010년	2011년	비고
	소계	480	470	
문 과 대 학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화학과 40 독일어문학과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5 철학과 35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11년 학과명칭 변경 11년 5명 감원 11년 5명 감원
	소계	190	190	
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예 능	·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 학	·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과 20	
	소계	210	210	
이 과 대 학	이 학	수학과 60 ·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소계	520	520	
공 과 대 학	장 하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신업경영공학과 60	

다	학	계열	2010년	2011년	비고
		소계	575	575	
	상하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소계	155	155	
	과학	인 산 호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소계	315	310	
과	정 하 하		행정학과 95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11년 5명 감원
		소계	170	170	
	술하	예 능	디자인학과 90 ·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7	_	소계	50	50	
글 벌 칼 지	머 피		글로벌학부 50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25) 글로벌비즈니스전공(25)	글로벌학부 50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25) 글로벌비즈니스전공(25)	
		소계	335	350	
· 나	평 거 1	0) 8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과 대	한 한	간 호	. 간호학과 25	간호학과 40	11년 15명 증원
		공 호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총	계	3,000	3,000	

대학	계열	2011년	2012년	비고
	소계	470	465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5 철학과 35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5 철학과 35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35	(2012년 5명 감원)
	소계	190	190	
사 범 대 학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u>36</u> 영어교육과 <u>36</u> 교육학과 <u>35</u> 역사교육과 <u>36</u>	국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5 교육학과 34 역사교육과 34	(2012년 1명 감원) (2012년 1명 감원) (2012년 1명 감원) (2012년 2명 감원)
	예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과 25	(2012년 5명 증원)
	소계	210		
이 과 대 학	이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2012년 5명 감원)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공 과 대 학	소계	520	520	
공 대 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기심등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2012년 학부제 유지하에 전공별 모집)

	소계	575	575	
경 상 대 학	인문 사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소계	155	150	
법 과 대 학	인문 사회	<u>법학부 155</u> 법학전공 (105) <u>특허법학전공 (50)</u>	법 학부 150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45)	(2012년 5명 감원)
	소계	310	310	
사 회 과 학 대 학	인문 사회	행정학과 95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소계	170	170	
조 형 예 술 대 학	예능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이학		의류학과 40	이과대학 폐지로 소속 변경
글 로	소계	50	60	
벌 칼 리 지	인문 사회	글로벌학부 50 글로벌커뮤니케이션 · 컬쳐 전공(25) 글로벌비즈니스전공(25)	글로벌학부 60 글로벌커뮤니케이션 · 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30)	(2012년 10명 증원)
	소계	350	555	
생 명	이학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생명시스템과학과 90 식품영양학과 50 화학과 60	(2012년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각 5명씩 감원 및 생명시스템과학과로 통합)
	간 호	<u>간호학과 40</u>	<u>간호학과 50</u>	(2012년 10명 증원)
나 노 과 학 대 학	공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이학		수학과 60 <u>광·전자물리학과 45</u>	이과대학 폐지로 소속 변경 (2012년 5명 감원)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이과대학 폐지로 소속 변경
총	계	3,000	<u>2,995</u>	(2012년 5명 감원)

대학	계열	2012년	2013년	비고
	소계	465	455	
문 대 학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5 철학과 35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35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0 철학과 3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35	13년 5명 감원 13년 5명 감원
	소계	190	190	
사 범 대 학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5 교육학과 34 역사교육과 34	국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5 교육학과 34 역사교육과 34	
	예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학	수학교육과 25	수학교육과 25	
	소계	520	570	
공 대 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간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5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라게공학과 60 광·센서공학과 45	13년 5명 증원 13년 신설
	소계	575	585	
경 상 대 학	인문 사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60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5	13년 5명 증원 13년 5명 증원

대학	계열	2012년	2013년	비고
	소계	150	150	
법 과 대 학	인문 사회	법학부 150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45)	법학부 150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45)	
	소계	310	305	
사 회 과 학 대 학	인문 사회	행정학과 95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 · 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13년 5명 감원
	소계	210	210	
조 형 예 술 대 학	예능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이학	의류학과 40	의류학과 40	
린 튼	소계	60	60	
글 벌 칼 리	인문 사회	글로벌학부 60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30)	글로벌학부 60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30)	
	소계	515	470	
생 명 · 나 노	이학	생명시스템과학과 90 식품영양학과 50 화학과 6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45	생명시스템과학과 90 식품영양학과 50 화학과 60 수학과 60	13년 폐지
과 학대 학	공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간호	간호학과 50	간호학과 50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교 양 융 복	인문	광고홍보학전공 0	광고홍보학전공 ()	(연계전공)
합 대 학	사회	금융공학전공 0	금융공학전공 0	(연계전공)
총	계	2,995	2,995	

(별표 2) 개 정(2010.9.28, 2011.12.6, 2012.1.13, 2012.4.10)

학위종별	하	과 (부)	
문 학 사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문헌정보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아동영어학전공),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사	아동복지학과		
이 학 사	수학과, 광·전자물리학과, 생명과학과, 4 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수학	
	① 일반 프로그램 학위 명칭(국문)		
	학위종별	학과(부)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학부	
		월디미디어역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 - 공학사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기계공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2) 일반 프로그램 학위 명칭(영문)	じピハーロのコム	
	학위종별	학 과(부)	
공학사	BS in Engineering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 디어학부(멀티미디어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건축 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기계공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 과	
	Bachelor of Architecture	건축학부(건축학전공)	
	Bachelor of Multimedia	멀티미디어학부(미디어영상전공)	
	③ 심화 프로그램 학위 명칭(국문)		
	학위종별	학 과(부)	
	공학사(전자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컴퓨터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건축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산업경영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기계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건설시스템공학심화)	건설시스템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나노생명화학공학심화)	나노생명화학공학심화 프로그램	

학위종별	하	과 (부)
	④ 심화 프로그램 학위 명칭(영문) 학위종별	학 과(부)
	BS in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B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	BS in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
	B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BS in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산업경영공학심화 프로그램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BS in Civil Engineering	건설시스템공학심화 프로그램

학위종별	학 과 (부)
건 축 학 사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멀티미디어학사	멀티미디학부(미디어영상전공)
경 영 학 사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창업전공, 광고홍보학전공, 컨벤션경영 학과
경 제 학 사	중국통상학과, 경제학과, 정보통계학과, 하이테크비즈니스전공
법 학 사	법학부(법학전공, 특허법학전공)
행 정 학 사	행정학과, 도시부동산학과, 경찰행정학과
정 치 학 사	정치언론·국제학과
미 술 학 사	미술교육과, 디자인학과, 회화과, 예술문화학과
체 육 학 사	생활체육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사	글로벌학부(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컬쳐전공 학사	글로벌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전공)
간 호 학 사	간호학과
금융공학사	금융공학전공

[서식1] 제 호

학위증

성 명 O O O OOOO 년 O월 O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_____전공,____부전공)을 이수하고 ____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0000 년 0 월 0 일

00대학장 00박사 0 0 0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0000 년 0 월 0 일

한남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서식2] 제 호

학위증

성 명홍 길 동 1984년 1월 1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정보통신공학전공)을 이수하고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07년 2월 9일

공과대학장 공학박사 박 우 전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07년 2월 9일

한남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김 형 태

[서식3] 제 호

학위증

성 명홍 길 동 1984년 1월 1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영어영문학전공)을 이수하고 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07년 2월 9일

문과대학장 문학박사 신 동 민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07년 2월 9일

한남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김 형 태

[서식4] 제 호

학위증

성 명홍 길 동 1984년 1월 1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영어영문학전공,경영학부전공)을 이수하고 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07년 2월 9일

문과대학장 문학박사 신 동 민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07년 2월 9일

한남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김 형 태

[서식5]



HANNAM UNIVERSITY

in recognition of completion

of the required course of study approved by the faculty

confers on

conjuis on
000
the degree of
Bachelor of O (in)

with all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pertaining thereto, given in the metropolitan city of Daejeon in the Republic of Korea on this Oth day of O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O O.

O O O, Dean	University Seal	O O O, President
OOO (Name of college)		Hannam University

[서식6]

제 호

학 위 증

성명 00000 0000년0월0일생 전공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한남대학교-학점-연도-일련번호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1996.06.01 개정 1996.12.12 개정 1977.09.01 제정 1997.08.01 개정 1998.08.04 개정 1999.03.01 개정 1999.07.28 개정 1999.11.01 개정 2000.02.01 개정 2001.03.01 개정 2001.11.26 개정 2002.03.01 개정 2003.09.01 개정 2003.12.02 개정 2004.08.10 개정 2004.11.02 개정 2004.12.01 개정 2005.04.26 개정 2005.08.23 개정 2006.02.06 개정 2006.06.27 개정 2006.09.26 개정 2007.02.06 개정 2007.03.01 개정 2008.03.01 개정 2008.10.09 개정 2009.09.01 개정 2010.01.14 개정 2010.12.10 개정 2011.02.08 개정 2012.04. 10 전면개정 2012.07.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학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과정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등록

- 제3조(등록) ①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 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되며, 이를 위반한 때 에는 제적된다.
 - ②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계절학기, 시간제등록(수강료)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점등록을 인정하여 학점 단위로 징수하며 학점당 수강료는 계열별로 정함
 -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학점미달로 수학을 계속 하여야 하는 경우 잔여 학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가. 1학점~3학점이하 : 등록금 전액의 1/6 나. 4학점~6학점이하 : 등록금 전액의 1/3 다. 7학점~9학점이하 : 등록금 전액의 1/2

- 라.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마. 채플과목 수강에 따른 등록금 : 없음
- 3.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3이 경과되기 이전의 일반(가사, 질병, 기타) 휴학자 및 군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당해학 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됨
- 4. 수업일수 1/3 이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금과 해당 학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5.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않고 군휴학한 자가 복학하 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함
- 6.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당해 학기 중간 고사 이전에 군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등록 금은 면제하고 기타 납입금은 납부하여야 함
- 7. 다전공 이수자의 제1전공과 제2,3전공 계열이 상이한 경우 계열별 등록금 차액을 다전공 신청시부터 취소 이전까지 징수하며, 다전공 이수 신청기간동안 제2,3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함
- 8.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 지 않음
- 9. 징계처벌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 10. 인턴십·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 11. 4학년(건축학전공 5학년) 2학기까지 정규과정을 마친 자로서 졸업유보로 수학을 계속하게 된 경 우 계절학기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제4조(등록금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신설 2012, 7, 31)
 - ②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는 등

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반환한다.

- ③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따라 반환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최초 휴학일로 한다.
 -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3.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 니함
- ④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 외하 학생이 납부하 금액으로 하다.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육과정편성

제5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다.

제6조(편성원칙) ①최저 졸업이수학점은 단과대학 및 입 학년도 별로 아래표와 같다.

단과대학별	입학년도		
인파네막힐	2006 ~ 2010	2011 ~	
문과, 경상, 법과, 사회과학, LGC	136학점	128학점	
사범대학	140학점	135학점	
공과, 조형예술, 생명·나노대학	140학점	136학점	
공과대학(건축 학전공)	165학점	160학점	

- ②단일전공 이수자의 전공 최저 이수학점은 60학점(건축학 전공 108학점)으로 한다.
- ③다전공 이수자의 전공별 최저 이수학점은 입학년도 및 이수전공 별로 다음표와 같다.

	دا د جا ت		입학년도					
O]수전공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	1전공	36	36	36	36	36	36	
반	2전공	36	36	36	36	36	36	
다	글로벌학부	-	42	42	42	42	42	
전	법학부	48	48	48	48	48	48	
공	건축학전공	72	72	72	72	72	72	
교직	1전공	42	42	42	50	50	50	
다전공	2전공	42	42	42	50	50	50	

- ④학기별 전공필수 학점은 0~15학점으로 한다.
- ⑤전공개설 및 편성학점은 현행대로, 전공편성은 90~111(건축학전공 132)학점 체제를 유지하되 필요 한 경우 입학정원 100명 이상 학과는 이 기준의 2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개설학점 108, 편성학점 132)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계열기초과목은 대학별 또는 학문계열별로 편성하되 인문·사회계열은 0~9학점, 이·공계열은 0~18학점, 사범계 및 예체능계열은 0~6학점, 공학인증과정은 0~30학점으로 한다. 개별 학과에서는 별도로 계열 기초과목을 편성할 수 없으며, 학과는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계열기초 과목의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제7조(제출서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 목적 및 목표
 - 2.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양 선택 교과목 요청표
 - 3.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계열기초 교과목 편성표
 - 4.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 5.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과 편성 신청서
 - 6. 특별학점 인정과목 신청서
 - 7.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연계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 제8조(심사기준)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1. 교육목적·목표 : 교육목적은 예상되는 교육의 결

- 체적으로 서술함
- 2. 과목명·과목개요 : 과목개설 취지와 더불어 가르 칠 내용과 기대효과를 기술함
- 3. 학점·강의·실험(실습)·설계
- 가. 모든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과목은 1학점 또는 2학점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 순수 실험·실습·실기 수업시수는 학점수의 2배 이내로 한다.
- 다. 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은 강의 1시간, 실 험·실습·실기는 2시간 이내로 한다.
- 라. I·Ⅱ로 편성된 교과목의 학점과 시수는 동일 하게 편성한다.
- 마. 동일교과목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학점수와 수업시간수가 동일하여야 한다.
- 4. 계열기초설정 : 특정학과의 전공과목을 계열기초 로 편성할 수 없음
- 5. 전공 선택의 필수화 : 조건을 제시하여 전공 선 택 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가. 전공 선택 과목을 전공필수과목의 선·후수과목 으로 지정할 수 없다.
- 나. 이론은 전공 선택으로, 그 내용을 다루는 실험 은 전공필수로 지정할 수 없다.
- 다. 내용상 선후관계가 분명한 과목을 I은 전공 선택으로, Ⅱ는 전공필수로 지정할 수 없다.
- 6. 특정학년에 전공학점을 집중하여 편성 할 수 없
- 7. 연계전공의 전공과목은 70학점 내외로 편성하고, 전공필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함
- 8. 연계전공 교육과정 편성시 기존의 교과목 이외에 연계전공만을 위해 편성된 교과목은 6학점 이내로 편성함

제2절 교육과정적용

과를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교육목표는 구 제9조(이수구분) 교육과정은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부전공, 다전공, 교 직, 일반선택)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 분할 수 있다. 다만, 성적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표 기 하다.

표시내용	1	2		3	,	4	5
야 구분	교양 野수 (계열/점)	전공필	!수	전공	선택	[부전 공	교직
표시내용	6	7		8	9	10	*
이수구분	교양 선택	제2부 전공		제2 선공	제 전·	일빈 선택	영어 강의

- 제10조(이수학점) ①이수학점에는 교양교육과정, 계열 기초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다전공, 부전공, 연계전 공 포함), 교직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또는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다.
 - ②제1항에서 규정한 학점이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과정 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학점을 이수학 점에 포함할 수 있다.
 - ③매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성적장학금을 수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6 학점(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중 인문·사회계열은 15 학점)이상 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수단위)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 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 만, 실험·실습, 실기 및 체육 등의 과목은 1학기 30 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제12조(이수원칙) ①교육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 여 당해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적변동이후부터는 신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③교양필수와 계열기초과목은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 교 육과정의 변경으로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제13조(대체과목폐지)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현행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토록 한다.

제14조(시행절차) ①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1. 강좌의 개설
- 2. 수강인원 및 분반의 설정
-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타 경미한 사항

제3절 교양교육과정

제15조(교양편성) ①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기본 학습능 력과 수학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한 다.

②교양교육과정은 다음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다.

영역 구분	1	2	3	4
영역 명칭	인간과 역사	글로벌 언어와 문화	문학과 예술	과학과 기술
영역 구분	5	6	7	
영역 명칭	사회와 이념	생활과 스포츠	직업과 윤리	

③영역별 교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이수방법) ①모든 학생은 위 영역 중 최소 3개영 역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학인증은 별도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제17조(한남사회봉사졸업인증제) ①2005학년도 입학생부 터 사회봉사활동 7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본교는 성적증명서에 이를 표기하고 P/F 처리하여 야 한다.

제18조(해외단기 어학연수) ①해외어학연수교과목의 개 설은 다음과 같으며, 재학 중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과 목	개설 학기	학 점	주 관	이수 영역
해외단기어학연수 I 해외단기어학연수Ⅱ	하계계절학기 동계계절학기	3-3-0	국제교류팀	교양 선택

- ②국제교류팀에서 주관하는 한남세계화연수단 참가학 생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 ③해외어학연수교과목의 성적평가는 P/F로 처리하며,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취업프로그램) 학생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양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양 선택 7영역(직업과 윤리)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절 전공교육과정

- 제20조(전공편성) ①전공교육과정은 학과에서 정하되 교 육과정 시행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②전공과목은 소속 학과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관련 학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속 학과에 개설된 동일 전공과목인 경우에 한하여 주전공의 전공과목 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1조(학점배정) 학과(부)별 학점배정표는 별표1과 같다.

제5절 다전공

- 제22조(정의) ①재학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 주전공 이수를 전제로 제2, 3전공 이수가 가능하다.
 - ②다전공을 이수할 때에는 해당전공별로 이수학점을 감면하며, 이수한 전공별로 각각 학위증이 수여된다.
 - ③다전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일반 다전공(모든 학과)

- 2. 일반 연계전공(광고홍보학전공. 금융공학전공) 의거하여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3. 교직 다전공(사범대 또는 교직 설치학과)
- 4. 교직 연계전공(공통사회전공, 공통과학전공, 도 덕 • 유리전공)
- 제23조(신청) ①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 2 학기 말부터 3학년 2학기 말까지 소정의 절차를 통 해 신청하며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2011학 년도 이전 입학자는 2학년 1학기말부터 3학년 2학기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②각 호의 경우는 다전공 신청을 불허한다.
 - 1. 건축학전공으로 신청하는 경우(단, 건축공학전공 자는 가능)
 - 2. 간호학과로 신청하는 경우
 - 3. 교직 미이수자가 교직 다전공 또는 교직 연계전 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4. 다전공 승인을 받은 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③제3전공 신청은 제2전공 이수중인 자로 제2전공 교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 다.
 - ④휴학생의 다전공 신청은 직후학기 복학예정자의 경 우에 한하고, 다전공 승인 후 직후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된다.
 - ⑤신설학과로의 다전공 신청은 제2, 3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연도부터 가능하다.
- 제24조(선발기준) ①다전공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 하다.
 - 1. 일반학과(전공) : 입학정원의 40% 이내
 - 2. 사범대 : 입학정원의 100% 이내
 - 3. 연계전공 : 인원제한 없음
 - 4.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 다전공 : 입학정원의 20% 이내
 - ②특정 학과(전공)를 희망하는 학생이 선발인원을 상 회할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 1. 제1순위: 전체 교과목 성적순
 - 2. 제2순위: 학과(전공) 계열기초과목 성적순
 - 3. 제3순위: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 제25조(이수학점) 다전공 학생은 주전공 및 제2, 3전공 의 학점을 아래의 다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에

다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7 H	입학	년도			
구분	2006~2010	2011~			
일반학과(전공)	36학점	36학점			
건축학전공	72학점	72학점			
법과대학	48학점	48학점			
글로벌학부	42학점	42학점			
사범대학(교직설치학과)	2006~2008 42학점	2009~ 50학점			

- 제26조(이수원칙) ①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 학년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199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학부기초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위원회의 허가에 의거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할 수 있
 - 2.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과 및 전공별 계열기 초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②제2, 3전공의 전공과목은 다전공 승인시점의 해당학 년 또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주전공 및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 다. 다만, 주전공과 제2전공에서 동일과목이 있을 경 우 최대 12학점까지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제3전공으로는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다전공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다전공 인정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 제27조(다전공포기) ①매 학기 6월 첫째 주, 12월 첫째 주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다전공 시작 당해학기에는 포기가 불가하며, 직 후 학기부터 포기가 가능하다.
 - ②다전공의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다전공 관련 취득학 점은 원칙적으로 교양선택 과정으로 구분하여 졸업 취득학점에 포함하되, 부전공 신청 시 부전공 과목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학위증서) 다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주전공 과 동일한 학위증서 번호로 제2, 3전공 학위증을 수 역한다.

제6절 부전공

- 제29조(이수대상) 부전공은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다. 단, 건축학전공 및 간호학과로의 부전공 이수는 불허하다.
- 제30조(이수방법) 부전공이수희망자는 해당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최종 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부전 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1조(학위증서) 부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부전공이수를 표기한다.

제7절 여계전공

- 제32조(정의)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학문 분야를 이수하는 것으로 연계전공의 주관부서는 교양융복합대학으로 한다.
- 제33조(신청 및 이수원칙) 연계전공의 신청 및 이수원 칙은 다전공 기준에 준한다.

제8절 교직과정

제34조(교직과정) 교직과정 이수희망지는 "교직과정이수 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업

제1절 수업시간표

- 제35조(운영원칙) ①1학점당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워칙으로 한다.
 - ②총 수업기간은 15주 이상이여야 하며 이를 단축할 수 없다. 단, 계절학기는 4주 이상으로 편성한다.
- 제36조(개설과목) ①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표에 의한

- 다. 다만,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과목이라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교양과목은 교양융복합대학, 교직과목은 교무연구처 교직과, 계열기초 및 전공과목은 소속대학 및 학과 가 주관하되,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 제37조(시간표의 공지) 수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 강신청 1주일 전에 수업시간표를 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수업시간배정원칙) ①전임교원의 수업시간은 4일 이상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강의를 주당 6시 간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
 - ②전임교원의 연구일은 특정요일에 소속학과(학부) 교 원의 50% 이상을 배정할 수 없으며, 시간표 배정 시 1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③전임교원은 학생상담을 위하여 주당 3시간의 Office Hour를 지정 공지하여야 한다.
 - ④시간강사가 주당 7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할 경우에 는 2일 이상 분산 배정하여야 하며 3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할 경우 1일에 집중 배정할 수 있다.
- 제39조(수업시간) ①수업시간의 운영단위는 50분과 75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업은 주중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연습은 수업특성상 연속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수업시간은 75분제 수업의 경우 A교시부터 G교시, 50분제 수업의 경우 0교시부터 10교시로 운영한다.
- 제40조(시간배정) ①3학점 강의에서 75분 수업은 1+1로 배정하고 50분 수업은 2+1로 배정한다. 다만, 2학점 (2시간) 강의는 연속강의를 할 수 있다.
 - ②3학점 강의의 수업시간배정은 격일제로 동일교시, 동일강의실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조(배정순위)①수업시간표의 배정순위는 채플, 교양 선택, 교양필수(공통) 교과목을 우선배정하며 교직, 군사학, 계열기초, 전공 등의 순위로 한다.
 - ②실험·실습·실기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분산 편성하여 실험실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정강의실을 우선 배정 하다.
 - ③실험을 포함하는 교과목의 경우 강의 및 실험분반의 담당은 1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우선적으로 담

당하고, 잔여 시간이 있는 경우 시간강사로 충당한다.

- ⑤학장 및 학과장은 개설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임교원 이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대학 및 다른 학과 전공교수에게 강의를 요청하고 가급적 시간강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 ⑥학과의 필수(계열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의 수업시간 은 다전공, 부전공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중복되지 않게 배정하여야한다.
- ⑦교양 선택 과목은 그룹별로 우선 배정하여야 함으로 각 그룹별 시간대에는 다른 과목(교양필수 및 전공 과목)을 배정할 수 없다.
- 제42조(배정제외) ①교무위원의 수업은 공식적인 회의시 가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②전임교원의 수업은 교직원채플 시간에 배정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개설 및 폐강기준) ①전공과목은 5명 이상 수강 신청자가 있을 때 개설할 수 있다.
 - ②교양과목은 수강신청자가 15명 이상이어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인턴십 및 현장실습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계절학기의 전공과목은 개설학과 학년편제정원의 25%(단, 학년편제정원 100명 이상일 경우 20명) 이상, 교양과목은 15명 이상의 수강신청자가 있어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4조(분반기준) 개설된 교과목의 분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수강인원이 해당 인원의 20%를 초과할 경우 분반을 할 수 있다.
 - 1. 교양과목: 70명
 - 2. 전공과목: 50명
 - 3. 외국어(회화·작문 등)과목: 25명 내외
 - 4. 실험·실습: 실험·실습실 정원내외(25명 내외)

제2절 수업관리

- 제45조(수업계획서) ①담당교원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②수업은 반드시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진행

되어야 한다.

- 제46조(외부출강) ①전임교원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대학으로 출강할 수 있다.
 - ②외부출강을 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외부출강 허가 원을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개강 또는 출강일 1개월 전까지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외부출강은 1개 기관에 한하며 '주1일 총6시간' 이내로 하되, 본교의 수업시간(학부, 대학원 포함)과 외부대학 수업시간을 합하여 한정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산학협력교수, 책임시수 미달교수, 책임시수 면제를 받는 보직교수는 외부출강을 할 수 없다.
 - ⑤외부출강을 이유로 본교의 수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 제47조(수업운영) ①수업은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을 휴강하게 될 때에는 휴·보강 계획서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국경일 및 공휴일로 인한 수업 결손의 경우 반드시 보강기간에 결손부분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 다.
 - ③원격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며, 강 의대상과목은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8조(출장관리) ①전임교원이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공·사적인 업무로 국내 및 국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 드시 출장원(해외여행허가원은 출국 10일 이전)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학기 중의 출장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되, 논문 발표 등 출장목적이 분명하여야 한다.(단순학회, 세 미나참석, 해외여행, 친지방문, 자료수집 등은 불가)
 - ③출장원 제출 시 관련근거서류(일정표, 참석자 명단 기재사항)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업의 결손이 발생 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보강 계획서를 사전 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출석) ①강의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는 매 교시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 ②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③ 결석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 직계존속, 직 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 우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질병, 사고로 입원 한 경우	입원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입원확인서 (종합병원)

-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 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 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공결원) 제49조 제3항의 사유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갖춰 소속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이 날인된 공결원을 수령하여야 한다. 공결 승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 2.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제3절 수강신청

- 제51조(수업시간표 공고) ①총장은 매학기별로 수강과 목, 담당교수, 강의시간 및 강의실 등이 기재된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1주일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 ②총장은 수업시간표 공고시 직전학기 수업평가 결과 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2조(수강지도) ①학과장은 소속 학생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이수사항을 수강지도 하여야 한다.
 - ②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임을 유의하여 본인

- 의 성적을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지 도를 받아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3조(수강신청) ①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에 따라 학기당 15~24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와 같이 학업성적 능력에 따른 수강신청학점의 상한 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학점포기로 재산출된 평점 평균은 수강신청학점 상한선 적용에 반영되지 않는다.

수강신청학점 상한선

2010학년도 입학생까지 2011학년도 입학생부		입학생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전체학과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공학·이학·예체능· 사범계열, 건축학전공
4.20이상	24학점	23학점	24학점
4.00이상	21학점	20학점	21학점
1.50이상	19학점	18학점	19학점
1.50미만	16학점	15학점	16학점

- ②수강신청학점 상한선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 기에 신청 가능한 학점에서 미사용한 학점 중 3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한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하 자격을 소지한 신(편)입학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에 한해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을 인문 계열은 15학점, 공학·이학·예체능 계열은 16학점으로 제한할 수 있 다.
- ④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후 첫 학기에 한하여 21학점(2011학년도 입학자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들은 19학점)까지 신청합 수 있다.
- ⑤학점등록(9학기 이상)의 경우 전액등록에 한하여 24 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⑥최종학기 수강신청은 6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⑦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다.
- ⑨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⑩외국인 교환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한국학 강좌를 일반 학생이 수강할 경우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의 상 한선 범위 내에서 3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 ①인턴십 교육과정 참여자의 수강신청, 변경, 취소, 학점취득 및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4조(수강변경) ①수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강 신청변경기간을 학사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이미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변경하여야 한다. 다 만, 수강신청 변경은 분반 및 폐강된 과목에 한하여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수강신청 된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목 의 성적은 낙제처리 한다.
- 제55조(수강포기) ①수강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 (수강능력부족, 적성의 부적합, 착오신청 등)로 중도 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서 정한 소정 의 기일 내에 2과목(6학점) 이내로 포기를 할 수 있 다. 단, 포기로 인한 졸업학점미달 및 장학금 수혜대 상 요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②수강포기 전에 모든 강좌의 분·폐강이 종료되므로 수강포기로 인하여 폐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기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56조(학사일정) 총장은 다음 학년도 수업계획(행사기 간 포함)을 학사일정으로 작성하여 시행학년도 2개 월 전까지 발표한다.
- 제57조(학점교류) ①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학점교류는 한국지역대학연합(RUCK)소속 7개 대학 등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과 가능하며 교류대학별 신청과목, 학점 등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별 신청기 준에 의한다. 단, 최종학기의 계절학기에는 타대학의 학점교류를 할 수 없다.
 - ②국내·국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연간 35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③학부 4학년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대학

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학기당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4절 계절학기

- 제58조(수강대상)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당해학기 휴학 중인 학생은 수강할 수 없 다
 - 1. 재학생 중 정규학기 이외에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 2. 당해학기 졸업을 목적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 3.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다른 학교의 장이 승인한 학생
- 제59조(과목개설 및 수강신청) ①전공과목은 개설학과 학년 편제정원의 25% 이상 또는 15명 이상, 교양과 목은 15명 이상의 수강신청자가 있는 경우 개설함을 원칙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
 - ②수강대상 학생은 매학기별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 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은 매 계절학기당 8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수강신청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수강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목이 폐강되거나 개강 전 수강신 청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전액을 반환한다.
- 제60조(수업관리) ①수업기간은 4주 이상으로 편성하며 수업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담당교수는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평가를 하여야 하며,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 용하다.
 - ③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에서 취득한 성적과 달리 계절학기로 처리하며 최종 졸업사정 시에만 인정한다.
 - ④졸업학점 부족으로 계절 학기를 수강한 경우 당해학 기에 졸업할 수 있다.
 - ⑤취득학점은 전공배정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 ⑥취득학점은 장학금 수혜에서 제외한다.

제5장 시험과 성적

제1절 시험

- 제61조(시험) ①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 및 학기말 시험을 실시한다.
 - ②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제62조(추가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시험기간 중 부득이 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강의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원을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시험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성적등급은"B[†]"까지 인정한다.
- 제63조(시험 중 부정행위처벌 및 기타) ①시험 중 부정 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받는 경우 부정행위 과목만 "F"로 처리한다.
 - ②시험 중 부정행위로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학기 전과목을 "F"로 처리한다.
 - ③기타 정학처벌로 인하여 시험기간 중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 되어 시험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성적 및 학점

- 제64조(군휴학자의 성적인정)①학기도중 중간고사를 마치고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입대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 성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개강일로부터 군입대일 1주일 전까지의 강의시간수를 총 강의시간수로 하여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된다.
 - ②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입영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입대일이 중간고사 이후와 기말고사 이전 사이에 해당되면 당해 학기 중간고사 응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 1. 학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를 필히 응시하여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 2. 학기를 인정받지 않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이전에 군휴학을 신청하여야하며, 이 경우 수강신 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 ③1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 성적을 인정받는 자는 군휴 학 전에 전공지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5조(성적의 정정)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고사 종 료 후 2주 이내에 학과(부) 게시판에 당해 학기 성 적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그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성적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 제66조(편입학생 학점인정) ①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 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의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교무연구처에서 최종 인정한다.
 - 1. 편입학생의 성적은 교육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함

【 편입학생 성적인정 학점 기준 】

구분	2012년 편입학생까지	2013년 편입학생부터	비고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70학점	64학점	3학년 1학기 편입학 (총 4학기 인정)	
공학·이학·예체능· 사범계열, 건축학전공	70학점	68학점		
학사편입	72학점	68학점		

- 2. 전공학점은 학기당 최대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 3. 해당 학과(부)의 심의 및 교무연구처의 인정을 받은 학점은 학적부에 "편입학00학점(교양 00학 점, 전공 00학점)인정"으로 기재함
- 4. 전공 인정학점은 인정된 과목과 학점수를 병기하여 학적부에 기재함
- 5.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동일 교과목에 한하며, 전적 대학 교과목의 학점수가 본교 교과목의 학점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학점수는 본교 교과목 학점수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

- 6. 편입학생은 졸업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점평균을 산정하며, 인정된 전적대학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함
- ②편입학생은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1. 편입학생(학사편입생 포함)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건축학전공 10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편입학생(전과생 포함: 이하 전입생으로 약칭함)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 램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③편입학생은 전공변경(전과), 조기졸업대상자에서 제 외된다.
- 제67조(출석의무) ①모든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 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3이상을 결석하 였을 경우 해당성적을 낙제처리 한다.
 - ②모든 학생은 재학 중 4학기 이상 채플과목을 이수하여 하며, 채플은 출석에 의하여 성적을 산출하되, P/F로 성적을 부여한다.
- 제68조(성적분류) ①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다.

등 급	실 점	평 점	등 급	실 점	평 점
A+	97~100	4.5	C+	77~79	2.5
A0	94~96	4.3	C0	74~76	2.3
A-	90~93	4.0	C-	70~73	2.0
B+	87~89	3.5	D+	67~69	1.5
В0	84~86	3.3	D0	64~66	1.3
В-	80~83	3.0	D-	60~63	1.0
			F	0~59	0.0

- ②평점평균은 성적평점 계(학점×평점)를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다. 다만, 졸업사정 시 평점평균은 F학점을 재수강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 수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 ③P/F로 부여된 성적에 대해서는 졸업학점으로는 인 정하지만 평점평균 성적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평점평균 성적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

립하다

제69조(환산점수) 성적평점평균에 대한 실점(백분율 점수)환산은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등급	평 점	환산 점수	등급	평 점	환산 점수
A+	4.50	100	C+	2.50	79
A0	4.30	96	C0	2.30	76
A-	4.00	93	C-	2.00	73
B^{+}	3.50	89	D+	1.50	69
В0	3.30	86	D0	1.30	66
В-	3.00	83	D-	1.00	63
Р	0.00	99	F	0.00	59

평점평균이 3.11인 경우						
Α	취득 평점평균	3.11				
В	상위 평점평균	3.30				
С	하위 평점평균	3.00				
D	하위 환산점수	83				
Е	상위 환산점수	86				
	최종 환산점수	84.10				
공식	(A-B)/(C-B)×(D-E)+D					

- 제70조(성적평가) ①모든 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②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A등급으로 처리 가능한 인원에 미달된 인원만큼은 B등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교양과목 (필수, 선택)			전공과목 (필수, 선택)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직실무영역)				
평가 방법	적용비율		평가 방법	적용비율		평가 방법	적용비율		<u>F</u>	
	A 등 0~25% B 등 0~60% C등급 40% 이		평가	0~30 B 0~70 C 등	틍		상대	A 0~40 B 0~85 C 등 15%	등 % 급이	
※ A등급으로 처리 가능한 인원에 미달된 인원만큼 B등급으로 처리 가능										

③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수강생 중 특기자(체육, 미술, 예능), 국내(외)교류학생, 군위탁생 및 시간제 학생

- 은 해당성적을 절대평가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총 수강신청 학생 수에서 제외 처리된다.
- 1. 수강인원이 15인 이하인 교과목
- 2. P/F로 성적을 표기하는 교과목
- 3. 군사학 교과목
- 4. 순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논문지도 관련 교과 목
- 5. 총장이 인정하는 기타 취업관련 교과목 및 특수 목적 교과목 등
- ④실험·실습을 포함하는 교과목의 평가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가 실험·실습성적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하며 실험·실습을 맡은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강의 담당교수에게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담당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교원번호가 빠른 교수에게 성적입력권한을 부여하며, 나머지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입력권한이 부여된 교수에게 성적입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동일교수가 담당하는 동일과목 분반강좌의 경우 시 스템으로 합반처리 후 합반인원에 대한 성적평가 비 율로 성적입력이 가능하다.
- 제71조(성적제출) ①담당교수는 성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학업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학기 수업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 출하여야 하다.
 - ②학기도중 중간고사를 마치고 군휴학을 완료한 학생에 대하여는 중간고사성적으로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은 입대일 1주 전까지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72조(성적정정) 확정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이의제기 및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출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확정이전의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수정·게시하여야한다.
- 제73조(성적확정) 성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교수가 제출한 성적을 처리하여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을 확정한다.
- 제74조(특별학점) ①정규학기수강 이외의 자격증 취득 및 외부공인시험으로 인정된 성적은 별도 학기로 구

- 분하여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특별학점은 수업연한 내에서만 취득을 허용하고, 개 별 자격증의 종류 또는 공인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총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동일자격증으로 2 개 이상의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다.
- ③매 학기 개강 2주차 소정의 기일 내에 특별학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 로 졸업직전 매 년 1월과 7월 셋째 주에 추가로 신 청할 수 있다.
- ④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75조(학점포기) ①이미 취득한 학점 중에서 C, D등 급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F학점은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②학점포기 신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일주일 전 정해 진 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 적으로 졸업직전 매 년 1월과 7월 셋째 주에 추가로 신청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최종학기 성적에 한 한다.
 - ③이수체계도에 의하여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의 경우는 당해 수강학기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학부로 입학한 경우에는 전공배정 전에 포기신청을 할 수 없다.
 - ⑤학점을 포기할 경우, 당해학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학사경고도 삭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학점포 기가 승인된 과목은 절대로 복구할 수 없다.
 - ⑥학점포기가 승인된 후에는 해당학기의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한다.
- 제76조(재이수) ①모든 교과목은 F등급에 한하여 재수 강을 할 수 있다.
 - ②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 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C+이하의 교과목은 소정의 학점포기기간에 반드시 학점을 포기한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③학점을 포기하지 않고 임의로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
- 제77조(학위취득요건) 학위취득의 필수요건으로서 졸업

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 작품, 실험실습보고서 등 당학기 말에 전공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으로 분류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

제6장 학적

제1절 전공배정

제78조(신청) 학부로 입학한 경우의 전공배정은 1학년 2 학기말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신청한다.

제79조(전공배정 원칙) ①전공배정 인원 상한선은 전공 배정 대상자 수를 편제정원 비율로 계산하여 최대인 원을 120%이내로 최소인원은 50% 이상으로 한다. 단, 전공배정대상자가 학부편제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부재학생총원(배정시점)×입학정원비율(A전공 편 제정원/학부 편제정원)×120%"로 전공배정인원 상 한선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배정한다.

1. 제1기준 :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

2. 제2기준 : 1학년 2개 학기의 취득학점이 33학점 이상인 학생을 우선배정

3. 제3기준 : 특정전공의 희망자가 전공배정 상한선 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함

가. 1순위: 전체 평점평균

나. 2순위: 계열기초 과목 평점평균

다. 3순위: 전공 과목 평점평균

②전공배정예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전공배정 미신청자의 전공은 학부에서 따로 배정
- 2. 외국인 특례입학자와 특수교육대상자는 희망전공 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음

제80조(전공배정 절차) ①모집단위의 장은 전공배정계획 에 따라 당해 모집단위의 교수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배정한다.

- ②모집단위의 장은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의 전공을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지망비율이 낮은 전공으로 배정할 수 있다.
- ③법학부, 글로벌학부 소속의 학생이 첫 학기만 이수 하고 휴학하였을 경우 복학 후 1학기를 이수하고 해

제2절 전공변경

- 제81조(신청자격) ①전공변경(전과)은 2학기 이상 이수 한 자가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미 전공변경 이력이 있는 자나 4학년 진급예 정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②편입생과 특기자 입학생의 전공변경은 불허하나 대 학학생정원령에 의거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이 전공 변경을 신청할 때는 예외로 한다.
- ③외국인 특례입학자의 전공변경은 위의 항들에도 불 구하고 1회에 한하여 예외로 전공변경할 수 있다.
- 제82조(선발원칙) ①전공변경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선발한다.
 - ②전공변경가능 여석은 학과(전공)별 편제정원의 120% 범위 내로 하며 전공변경가능 여석관리는 입 학년도별로 누적하여 관리한다. 단, 사범대와 간호학 과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별도로 정한다.
 - ③전공변경 희망자가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 할 경우에 는 교수회의에서 선발하되. 별도의 시험과 면접을 부가할 수 있다.
 - ④전공변경을 허가받은 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개강일 이전에 휴학할 수 없다.
 - ⑤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교는 전공변경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3절 휴학·복학

- 제83조(휴학) ①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은 소정의 휴학절차를 이행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야 하다.
 - ②휴학은 일반휴학, 군휴학, 질병휴학이 있으며 입학생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군휴학과 질병휴 학을 제외하고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이 불가하다.
 - ③군휴학과 질병휴학은 각각 입영통지서 및 종합병원 전치 4주 이상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하다.

- ④일반(가사)휴학은 매 학기 개강일 이전 소정의 기간 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⑤매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는 등록절차 없이 휴학을 할 수 있다. 단,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1/3선까지 학기 중 휴학이 가능하다.
- ⑥학부소속인 학생이 1학년 2학기를 수료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전공지망원서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입대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군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⑧전 항의 경우, 군휴학기간, 일반휴학기간의 구분 기 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입대일이 일반휴학 당해 학기말(기말고사 종료 일)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군휴학기간"으 로 가주함
 - 2. 입대일이 일반휴학 당해 학기말(기말고사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일반휴학기간" 으로 간주함
- ⑨일반휴학의 경우 휴학신청 당해 학기의 성적은 불인 정하다.
- 제84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신입학 및 편입학에 따라 각 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휴학의 경우 2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군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군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 내에서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신입학 : 최대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통산하 여 6학기
 - 2. 편입학 : 최대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통산하 여 3학기
 - 3. 재입학 : 본인의 신입학 시점으로부터 통산하여 6학기
- 제85조(휴학연장) 특별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소정의 휴 학 연장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6조(복학신청)①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 만료되기 전 소정의 등록 및 복학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학절차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제적된다.
- ③군 복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 중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복학을 할 수 있다
- 제87조(휴학취소) 휴학절차를 마친 자가 휴학을 취소하 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1/3선 이내 소정의 절차 를 통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절 학사경고 및 제적

- 제88조(학시경고) ①정규학기를 이수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는다.
 - 1. 학기당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
 - 2.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 (단 국내·외 교류유학생, 졸업학점 이미 취득한 자 예외)
 - ②제1항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학적부에 기재하고 본인 및 보호자, 소속 학과에 통보하다.
 - ③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16학점(2011년도 인문사회계열 입학생부터는 15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수강신청 학점 을 제한하다.
- 제89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 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2.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포함)
 - 4. 재학년한 내에 졸업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5.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 6. 2학기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국내·외 교류유학생 제외)
- 제90조(자퇴)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제5절 재입학

- 제91조(재입학) ①재입학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 적하였던 전공(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2회에 한 하여 재입학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 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재입학 여석산정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따로 정한다.
 - ③재입학 지원자는 매 학기 개강 전 소정기한 내에 소 정의 절차를 통하여 재입학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 다.
 - ④재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⑤재입학이 허가된 지는 소정 기한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재입학금 포함)을 필하는 등 수학에 필요한 절 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재입학 허 가를 취소한다.
 - ⑥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이전에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해당학과(부) 및 학년 교육 과정에 따라 잔여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⑦학칙 제47조에 의한 징계제적은 제적된 날로부터 1 년 이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⑧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절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 제92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 은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정 정원을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3. 국적 또는 성별

제7장 학생교류

제1절 외부대학

- 제93조(대상·인원) ①외부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에 따라 당해 학생의 취득학점 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교류를 체결하지 아니한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가된 경우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외부대학에 수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생으로 서 직전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1.50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외국대 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외부대학에 수학하는 인원은 매학기 해당학과의 편 제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94조(교류승인) ①외부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총장은 외부대학과 협의를 거쳐 수학대상자를 승인 하고 그 명단을 외부대학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외부대학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 ③국내의 외부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1년 이 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수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 ④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되,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와 학기개시일이 상이하여 본교의 학기 중간에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의 학기개시일 부터 기산한다.
- 제95조(학점인정) ①국내의 외부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은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지 아니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 ②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과목 중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할 수 있다.
 - ③외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은 본교 과목명으로 인 정하며 학점 수는 해당 대학과 본교 동일과목 학점 수 중 작은 수로 인정한다.

- ④본교와 성적환산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외부대학의 등급과 상관없이 실제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 한다.
- 제96조(등록금) 수학을 승인받은 학생은 수학기간에 속 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7조(학위수여)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절 본교수학

- 제98조(대상·인원) ①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부대 학 학생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재 학생에 한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아니 한 외국 정규대학의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 학할 수 있다.
 - ②수학허가인원은 당해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허가인원은 국내·외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한다.
- 제99조(교류승인) ①외부대학의 장은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명단을 수강신청 개시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②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학허가여부를 확정한 후 외부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수학이 허가된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④수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학기간 중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본교의 학술정보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00조(취득학점) ①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 는 당해 외부대학에서 정한 방법 또는 학술교류협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②학점의 평가 및 평정은 본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외부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101조(등록금) 수학이 허가된 학생의 등록금은 학술 교류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2조(학위수여)국내·외 외부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술교류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수료·졸업 제1절 수료

제103조(수료기준) 각 학년을 수료하는데 있어서의 인 정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졸업 학점 수료 학년	128 학점	135 학점	136 학점	140 학점	150 학점	160 학점	165 학점
1학년	32학점	34학점	34학점	35학점	37학점	32학점	33학점
2학년	64학점	68학점	68학점	70학점	75학점	64학점	66학점
3학년	96학점	102학점	102학점	105학점	112학점	96학점	99학점
4학년	128학점	135학점	136학점	140학점	150학점	128학점	132학점
5학년						160학점	165학점

제2절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포함)

- 제104조(졸업논문제출) ①학위취득을 위한 졸업논문 제출은 전학과에 적용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졸업인증,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작품발표로 대체 할 수 있다.
 - ②졸업종합시험 및 실기발표에 의한 졸업논문 대체 여부는 매년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공고시에 확정 발표한다.
 - ③졸업논문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실 시 4학기 이전에 변경 사유를 해당 대학장을 경유,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졸업논문 적용을 학과(전공)별 자체 졸업인증제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1. 자체 졸업인증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전 공)는 시행 전 학년도에 자체 졸업 인증내규를 정하여 해당 대학장을 경유,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2. 졸업인증 내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함

- 가. 인증평가 항목(각종 자격증 및 기타)
- 나. 평가항목별 인증점수 기준표
- 제105조(논문작성 제출자격) ①졸업논문 작성계획서의 제출(실기발표계획서, 졸업종합시험신청서)은 4년제 는 6학기를 이수하고 7학기에 재학 중인 자, 5년제 는 8학기를 이수하고 9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논문작성 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다음 각 호 1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학과(부)별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 받아야 한다.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 성격에 따라서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이경우 각 연구자는 연구분야의 중복이 있어서는 아니되다.
 - 1. 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학기 3월 15일(전기졸업 예정자) 및 9월 15일(후기졸업예정자)까지 학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논문작성의 방법, 규격, 양식 등은 소속학과(부) 가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
- 제106조(논문제출시기) 완성된 논문은 최종 졸업학기를 기준으로 5월 30일(후기졸업자) 및 11월 30일(전기 졸업자)까지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7조(지도교수 선정) 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에 의하여 학과(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8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졸업논문 심사위원은 전 임교수 중에서 학과(부)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논문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제109조(논문심사) ①제출된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학과(부)회의에 심사를 부의할 수도 있다.
 - ②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치로 계산한다.
- 제110조(종합시험자격) 본 규정 제108조 제1항에 의한 다.
- 제111조(종합시험과목) ①종합시험의 과목(혹은 영역)은

해당학과(부) 교수회의에서 결정, 공고한다.

- ②종합시험은 소속학장이 관리한다.
- 제112조(종합시험 출제) ①출제위원은 학과(부)장이 추 천하여 소속학장이 위촉한다.
 - ②시험은 매 과목 또는 영역별 60분으로 하고, 과목당 2인 이상이 출제하되 출제위원당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다.
 - ③합격기준은 매 과목 또는 영역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평균 70점 이상을 종합 합격으로 한다. 과목당 합격은 60점 이상으로 하고 59점 이하를 과목 낙제로 한다.
- 제113조(종합시험 시기) ①본 시험은 5월(후기졸업) 및 9월(전기졸업)에 실시한다.
 - ②재시험자가 있는 경우 6월(후기졸업) 및 11월(전기 졸업)에 실시할 수 있다.
 - ③학과(부)장이 시험과목 및 구체적인 사항을 시험 2 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 ④성적은 시험종료 2주일 이내 발표할 수 있다.
- 제114조(졸업작품 자격) 본 규정 제108조 제1항에 의한 다
- 제115조(졸업작품 제출)졸업작품은 본인이 선택한 전공 실기와 동일한 과목의 작품 2점을 5월말(후기졸업) 과 10월말(전기졸업)에 해당학과(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제116조(졸업작품 규격) 전공별 졸업작품 규격은 아래와 같다.
 - 1. 동양화, 서양화 : 200호 이내
 - 2. 조 소 : 높이 3m 이내
 - 3. 판 화: 켄트지 전지 이내
 - 4. 서 예 : 높이 3m 이내
 - 5. 사 진 : 전지 이내
 - 6. 공 예: 100, 200, 300cm
- 제117조(졸업작품지도교수) ①학과(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전공별 담당교수를 선정하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 ②학장은 지도교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그 명단을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8조(졸업작품심사 및 작품전) ①졸업작품 심사위원 은 지도교수를 포함 해당학과(부)의 전임교수 전원

- 이 분야별로 심사한다.
- ②작품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각 심사위원 평가성적의 평균치로 계 산하다.
- ③작품전에는 심사에 합격된 작품만 전시한다. 다만, 후기졸업자의 작품은 다음 학년도 졸업예정자와 같 이 전시한다.
- 제119조(성적제출) ①평가한 성적은 졸업사정 1개월 전 까지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평가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A, B, C, F 등급으로 기재한다.
- 제120조(재심사) ①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졸업논문심사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논문 재 제출, 작 품 재 제출, 종합시험 차기 심사기간에 재심사를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요청 가능기간은 최초 졸업심사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②졸업논문에 불합격한 자는 그 학적상태를 수료로 변경하다.
- 제121조(졸업논문 관리) ①졸업논문(종합시험, 졸업작품, 졸업인증 등)은 졸업학기에 이수한 전공별로 시행하되, 당해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제2, 3전공의 졸업논문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졸업논문의 시행절차는 학과장이 정한다.
 - ③졸업논문의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는 실시 전학년도(1년 전)에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학과장은 졸업논문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⑤학과장은 졸업논문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졸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졸업논문 시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반서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학과장의 책임 하에 따 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2조(공고) 졸업논문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공 고를 통해서 고지한다..

제3절 졸업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 ①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전체 평점평균 2.0이상으로 8학 기(건축학전공 10학기)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졸업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졸업최저이수학점 】

구분	2002~2005 년 입학생	2006~2010 년 입학생	2011년 이후 입학생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140학점	136학점	128학점
공과 · 이과 · 예체능·	140학점	140학점	136학점
사범계열	140학점	140학점	135학점
건축학전공	165학점	165학점	160학점

- ②학과(부)별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과목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과목(부전공, 교직, 다전공)별로 소정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 및 졸업사정 절차는 따로 정한다.
- ③전체 평점평균이 2.00 이상으로 한다.
- ④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과목 모두를 이수 하여야 하다.
- ⑤졸업논문(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 등)심사에 합격(C등급 이상)하여야 한다.
- ⑥채플을 4학기 이수하여야 한다.
- ⑦한남사회봉사인증을 7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외국인 및 장애인의 봉사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편입 : 36시간 이상
 - 2. 외국인 : 신입학(72시간 또는 4회 이상), 편입학 (36시간 또는 2회 이상)
 - 3. 장애인 :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시수를 면제 할 수 있음
- 제124조(조기졸업) 학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로서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는 6학기(건축학

전공 8학기) 이상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 ②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부) 장, 학장을 거쳐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 야 하다.
- ③조기졸업요건에 미달되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전액등록 하여 야 한다.
- 제125조(다전공 졸업요건) ①다전공 이수시, 제1전공 졸업요건(전공 60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제2, 3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전공만으로 졸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 3전공은 자동 취소된다.
 - ②제1전공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였다면 제2, 3전공의 부족한 학점에 대해서만 학점등록을 하여 다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제1전공 학위증은 제2, 3전공 과 함께 졸업 시 동시 수여한다.
- 제126조(학위수여) ①졸업사정은 졸업을 담당하는 부서 의 장이 시행하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자 를 최종 확정한다.
 - ②다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를 전공별로 수 여한다.
 - ③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 기하다.
- 제127조(공학교육심화과정)①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의 학생은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부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심화과정 및 일반과정이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화과정이수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8조(명예졸업증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1. 본교 학사과정 재학(적)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하 여 희생하거나 공헌함으로써 부득이 소정의 과정 을 이수하지 못한 자
 - 2. 국가와 지역사회 및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②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다.
- 제129조(졸업유보 및 연기)①졸업유예에 관한 용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졸업유보 : 졸업학점, 논문, 봉사시간을 모두 충 족한 자의 졸업유예
 - 2. 졸업연기 :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논문 또는 봉사 시간을 미충족한 자의 졸업유예
 - ②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대상자가 졸업유보 또는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 1. 졸업유보(연기)신청 자격은 재학생 중 졸업학점 을 이수한 자로 하며 재학연한 내에서 2개 학기 까지 유보 가능함
 - 2. 졸업유보(연기)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학기에 최소 1학점 이상 최대 3학점 이하를 수강하여야 하며 본 규정 제3조 제2항 11호에 의거하여 학점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3. 졸업유보(연기)신청 시기는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말 성적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졸업유보 취소신청은 졸업사정 2일전까지로하며,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 4. 졸업유보(연기)기간에 취득한 학점은 전체성적에 반영됨
 - 5. 졸업유보(연기)자는 휴학이 불가하며 졸업유보 (연기)를 신청하고 졸업사정 이전 소정의 등록기 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졸업 또는 수료로 처리함
 - 6. 졸업유보(연기)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가 집
 - 7. 졸업유보(연기)자는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 가능함
 - 8. 졸업유보(연기)자가 재학도중 취업의 사유로 학 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기말고사 이전까지 수강신청을 포기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 졸업 (또는 수료)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130조(졸업시기) 졸업시기는 매 년 전기, 후기로 한다.

제9장 제증명 발급

- 제131조(제증명 발급) 학교는 재학, 재적, 졸업예정 등학사관계 증명서 및 학생증 등 학생신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며, 해당 증명서의 발급시기는 각 호와 같다.
 - 1. 졸업예정증명서(학부생) : 최종학기 재학생을 대 상으로 개강일부터 발급이 가능함
 - 2. 수료증명서(학부생) : 당해 학기 성적 확정일을 기준으로 취득학점에 따라 수료학년을 구분하여 발급이 가능함
 - 3. 졸업증명서 : 학위수여일자부터 발급이 가능함

부 칙

이 세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 34, 35, 37, 38조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 터 적용하며, 제6조 제3항은198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85년 5월 15일부터 시 행한다.
- ②(기타사항) 이 변경세칙 중 제35조의 2는 1988년 2월 졸업자까지만 인정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0년 5월 25일부터 시 행하다.
-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2조 제2항 제3,6호 는 90년 2학기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4년 2월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4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6년 4월17일부터 시행 하다.
- (제2조 2항2호 중 단서 추가(채플 제외), 제8조 단 서추가, 제23조 전체 내용변경, 제69조 중 제6호 신 설)
-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23조는 199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11조와 제12조는 199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23조는 199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하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12호 한국학 강좌 근거 신설, 제58조 제1항의 학과별 종합시험과목을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토록 변경, 제60조 제3항에서 종합시험과목공고를 2개월 이전에 학과장 공고토록 수정함)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하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전공배정 결과는 이 변경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다.

②(경과조치)

- 1. 본 변경세칙중 제2조 제7항, 제27조 제3항은 2000 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2학기 까 지 다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에게는 소급하 지 않는다.
- 2. 제39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은 2000학 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 까지의 전과(부)시기는 변경전 학칙(제2,3학년 재 학중 1회에 한하여 학기초에 전과 [부] 신청)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변경세칙 중 제27조 제4항 제9호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1학년도 1학 기부터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소급하지 않 는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다.
- ②(경과조치) 이 세칙 변경 당시의 생물학과, 생물 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과학전공에 재 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해하다.
- ②(경과조치) 1. 제14조, 23조, 제69조는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변경 전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하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다.
- ②(경과조치)
 - 1.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는 2002학년도부

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사범대학 부전공 이수학점 배정표는 2001학번부터 적용하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9조 7호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시행세칙 중 제69조 7호는 2005 학년도 입학생과 2007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전 면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별표 1】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

[2007학년도 교육과정)

		주	군과목	-		교	얏	과 목	<u>!</u>		
						필수			선택		
대학	학과, 부(전공)					계열					졸업최저
414	역사, 구(선 6)	필수	선택	소계	공통	(학부)	계	교양	부	교	이수학점
					필수		71	선택	전공	직	
		-				기초					
	국어국문학과	9	51	60	13	0	13	-	(21)	(20)	136
	문예창작학과	9 15	51	60	13	6	19	-	(21)	- (- 0)	136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영어영문학부	- 4							(0.1)	(20)	
	영어영문학전공	14	46	60	13	0	13	-	(21)	(20)	136
문과	아동영어학전공	16	44	60	13	0	13	-	(21)	(20)	136
대학	일어일문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 "	유럽어문학부								(24)	(20)	
	프랑스어문학전공	15	45	60	13	8	21	-	(21)	(20)	136
	독일어문학전공	15	45	60	13	8	21	-	(21)	-	136
	사학과	12	48	60	13	0	13	-	(21)	- (20)	136
	철학과	14	46	60	13	0	13	-	(21)	(20)	136
	기독교학과	12	48	60	13	0	13	-	(21)	(20)	136
	국어교육과	12	48	60	13	2	15	-	(30)	(20)	140
) H	영어교육과	13	47	60	13	2	15	-	(30)	(20)	140
사범	교육학과	15	45	60	13	2	15	-	(30)	(6)	140
대학	역사교육과	0	60	60	13	2	15	-	(30)	(20)	140
	미술교육과	14	46	60	13	2	15	-	-	(20)	140
	수학교육과	15	45	60	13	2	15	-	4=	(20)	140
ا داما	수학과	12	48	60	13	18	31	-	(21)	(20)	140
이과	광·전자물리학과	15	45	60	13	24	37	-	(21)	(20)	140
대학	의류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40
	생활체육학과	14	46	60	13	0	13	-	-	-	140
	컴퓨터공학과	15	45	60	13	30	43	- -	(21)	(20)	140
	전자공학과	12	48	60	13	30	43	-	(21)	(20)	140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20)	140
	멀티미디어공학부										
777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3	18	31	-	(21)	(20)	140
공과	미디어영상전공	12	48	60	13	18	31	-	_	-	140
대학	건축학부								(0.1)	ļ	410
	건죽공학전공	15	45	60	13	30	43	-	(21)	-	140
	건축학전공	15	93	108	13	30	43	-	-	-	165
	토목환경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	140
	산업경영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 (20)	140
	기계공학과	16	44	60	13	24	37	-	(21)	(20)	140
	경영학과	0	60	60	13	18	31	-	(21)	(20)	136
	회계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71 11	무역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경상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대학	창업전공(연계전공)	3	33	36	-	_	-	-	-	-	
	중국통상 · 경제학부								(0.1)	ļ	
	중국통상전공	6	54	60	13	18	31	-	(21)	-	136
	경제전공	6	54	60	13	18	31	-	(21)	(20)	136

		্ব	선공과목	<u>I</u>		교	양	과 목	-		
						필수			선택		졸업최저
대학	학과, 부(전공)	필수	선택	소계	공통	계열		교양	부	교	이수학점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선택	전공	직	,,,,,,,,,,,,,,,,,,,,,,,,,,,,,,,,,,,,,,,
경상	정보통계학과	15	45	60	13	15	28	-	(21)	-	136
	하이테크비즈니스전공(연계전공)	6	30	36	-	-	-	-	-	-	
대학	컨벤션산업학과	15	45	60	13	15	28	-	-	-	136
법과	법학부										
'''	법학전공	15	45	60	13	15	28	-	(21)	-	136
대학	특허법학전공	13	47	60	13	15	28	-	(21)	-	136
	행정학과	15	45	60	13	12	25	-	(21)	(20)	136
	정치언론・국제학과	12	48	60	13	12	25	-	(21)	-	136
사회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3	12	25	-	(21)	_	136
과학	광고・홍보학전공(연계전공)	6	30	36	-	-	-	-	-	-	
대학	경찰행정학과	9	51	60	13	12	25	-	(21)	_	136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3	0	13	-	(21)	-	136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미술	디자인학과	13	47	60	13	8	21	-	-	(20)	140
대학	회화과	15	45	60	13	8	21	-	-	_	140
	예술문화학과	14	46	60	13	8	21	-	-	-	140
린튼 7.711	글로벌학부										
글로벌 칼리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15	45	60	13	17	30	_	(21)	-	136
	생명과학과	15	45	60	13	18	31	-	(21)	(20)	140
	식품영양학과	15	45	60	13	6	19	-	(21)	(20)	140
생명 나노 과학	생명나노과학부						Ī				
나노 고하	생명공학전공	8	52	60	13	24	37	-	(21)	-	140
파력 대학	화학전공	15	45	60	13	24	37	-	(21)	(20)	140
	나노생명화학공학	15	45	60	13	24	37	-	(21)	-	140
	신소재공학	14	46	60	13	24	37	-	(21)	(20)	140

※ 졸업이수 주의사항

-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 를 인정받아야 함.
-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 직과정 이수자 42학점, 법학부 48학점)이상 이수 하여야 함.
-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전 공부터 36학점이상 이수함.
- 4) 본 배정표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정표를 적용 받음.
- 5) 사범대학에서의 부전공 최저이수학점은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적용됨.

- 6) 사범대학 부전공의 이수학점 배정표는 2001학번부 터 적용한다.
- 7)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7개영역 중 5개영역에서 15학점이상을 이수하여 야함. 단 사범대학은 3개영역에서 9학점이상을 이수해야함(2002~2005학년도 입학생은 2006학년도 입학생적용 교양선택과목 7개영역 중 3개영역에서 9학점이상을 이수해야함)
- 8)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 2005학년도 입학생부 터 졸업 전까지 한남사회봉사단에서 운영되는 사 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

[2011학년도 교육과정)

		2	전공과목	<u>.</u>			교 양	과 목				
						 필	 일수		선	 택	교과	
대학	학과, 부(전공)	필수	선택	소계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
문과	국어국문학과	9	51	60	16	9	-	25	-	21	8	128
대학	문예창작학과	11	49	60	16	9	-	25	-	21	-	128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8 8	128
	아동영어학전공	15	45	60	16		3	28	-	21		128
	일어일문학과	6	54	60	16	9	3	25	-	21	8	128
	프랑스어문학과	14	46	60	16			28	-	21	8	128
	독일어문학과	15	45	60	16	9	3	28	-	21	-	128
	사학과	12	48	60	16	9		25	-	21	-	128
	철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3	기독교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사범	국어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9	135
대학	영어교육과	14	46	60	16	9	-	25	-	-	8	135
	교육학과	0	60	60	16			25	-	-	9	135
	도덕·윤리 연계전공	8	42	50	-	- 9	-	- 25	-	-	8	
	역사교육과	9	51	60	16		-		-	-	9	135
	공통사회 연계전공	9	41	50	- 16	- 9	-	- 25	-	-	9	
	미술교육과	15	45	60		9	-		-	-	9	135
41=1	수학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8	135
이과	수학과	12	48	60	16	L	18	43	-	21	8	136
대학	광·전자물리학과	15 15	45 45	60	16	9	18	43 25	-	21	8	136
	의류학과			60	16	L	-		-	21	-	136
777	생활제육학과	15	45 45	60	16	9	-	25 49	-	21	0	136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15 12	45 48	60 60	16 16	9	24 30	49 55	-	21 21	9	136
내역	전사등역과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55	-	21	-	136
	정보중산등역사 멀티미디어공학부	15	43	00	10	9	30	33	-		-	136
	필드미디어 8 역 구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6	9	18	43		21	8	136
	미디어영상전공 	15	45	60	16	9	18	43	- -	21	8	136
	건축학부	13	1	00	10	2	10		<u>-</u>			130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15	45	60	16	9	30	55	<u>-</u>	21	_	136
	건축학전공 건축학전공	97	11	108	16		15	40				160
	건설시스템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산업경영공학과	0	60	60	16	9	30	55	-	21	_	136
	기계공학과	15	45	60	16	9 9 9	30	55	- -	21	-	136
경상	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_	21	8	128
대학	회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	무역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중국통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경제학과	6	54	60	16	9	9	34	-	21	8	128

		7	선공과목	곡		ۮٙ	고 양	과 달	국		교과	
2 -2	~					필	.수		선	택	교육	졸업최저
대학	학과, 부(전공)	필수	선택	소계	공통	서태	계열		교양	부	개설	이수학점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선택	전공	학점	
경상	비즈니스통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대학	컨벤션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법과	법학부											
대학	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특허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사회	행정학과	15	45	60	16	9	_	25	_	21	8	128
- 기 국	정치언론・국제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과학	광고 · 홍보학 연계전공	6	30	36	-	-	-	-	-	-	-	
대학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경찰행정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6	9	-	25	-	21	9	128
미술	디자인학과	10	50	60	16	9	6	31	-	21	9	136
대학	회화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예술문화학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린튼	글로벌학부											
ЭЭН	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	15	45	60	16	9	9	34	_	21	_	128
글로벌 칼리지	트전공	10	1	00	10	,		91	_	<u> </u>	_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생명	생명과학과	15	45	60	16	9	17	42	-	21	8	136
	공통과학 연계전공	12	38	50	-	-	-	_	-	-	8	
나노	식품영양학과	15	45	60	16	9	0	25	-	21	-	136
과학	생명공학과	9	51	60	16	9	18	43	-	21	-	136
대학	화학과	15	45	60	16	9	18	43	_	21	8	136
	나노생명화학공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	136
	신소재공학과	14	46	60	16	9	18	43	-	21	8	136
	간호학과	15	75	90	16	9	18	43	-	-	-	136

※졸업이수 주의사항

-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를 인정받아야 함.
-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 50학점, 법학부 48학점, 글로 벌칼리지 4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전 공부터 36학점 이수함(단, 교직연계전공은 전공

과목 50학점 이수)

- 4) 본 배정표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 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 정표를 적용받음
- 5)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2011학년도 입학생부 터 7개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6)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2005학년도 입학생부 터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2012학년도 교육과정]

		7	선공과목	곡			교 양	과 돈	1			
						互]수		선	택	교과	
111	취기 보(하기)					_	- ' 				교육	졸업최저
대학	학과, 부(전공)	필수	선택	소계			계열			,,	개설	이수학점
		21丁	선택	조계	공통	선택	(학 부)	계	교양	부	학점	
					필수	필수	(' ' / 기초	. 4	선택	전공	1 1 11	
							/132					
문과	국어국문학과	9	51	60	16	9	-	25	-	21	8	128
대학	문예창작학과	11	49	60	16	9	-	25	-	21	-	128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8	128
	아동영어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8	128
	일어일문학과	6	54	60	16	9	-	25	-	21	8	128
	프랑스어문학과	14	46	60	16	9	3	28	-	21	8	128
	독일어문학과	15	45	60	16	9	3	28	-	21	-	128
	사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철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기독교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사범	국어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9	135
대학	영어교육과	14	46	60	16	9 9 9	<i>-</i>	25	-	-	8	135
	교육학과	0	60	60	16	9	-	25	-	-	9	135
	도덕·윤리 연계전공	8	42	50	-	-	-	-	-	-	8	
	역사교육과	9	51	60	16	9	-	25	-	-	9	135
	공통사회 연계전공	9	41	50	-	-	-	-	-	-	9	
	미술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9	135
	수학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8	135
공과	컴퓨터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9	136
대학	전자공학과	12	48	60	16	9	30	55	-	21	-	136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_	136
	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미디어영상전공	15	45	60	16	9	18	43	-	21	8	136
	건축학부	ļ	ļ									
	건축공학전공	15	45	60	16	9	30	55	_	21	-	136
	건축학전공	97	11	108	16		15	40	-	-	-	160
	건설시스템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21	_	136
	산업경영공학과	0	60	60	16	9	12	37	_	21	-	136
	기계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경상	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_	21	8	128
대학	회계학과	15	45	60	16	9	9	34		21	8	128
	무역학과	15	45	60	16	9	9	34		21	8	128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6	9	9	34		21	8	128
	중국통상학과	15	45	60	16	9	9	34	_	21	_	128
	경제학과	6	54	60	16	9	9	34	_	21	8	128
	비즈니스통계학과	15	45	60	16	9	9	34		21	-	128
	컨벤션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7	전공과무	루			교 양	과 된	1		교과	
						핕	<u>-</u>]수		선	택	교육	졸업최저
대학	학과, 부(전공)	필수	 선택	_ _ 소계	공통	서태	계열	_	교양	부	' 개설	이수학점
- 11 - 1				"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선택	전공	학점	11.10
법과	법학부						, , , , ,				, , ,	
대학	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특허법학전공 -	6	54	60	16	9	9	34	-	21	-	128
사회	행정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과학	정치언론・국제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대학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경찰행정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6	9	-	25	-	21	9	128
조형	디자인학과	10	50	60	16	9	6	31	-	21	9	136
예술	회화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대학	예술문화학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의류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36
린튼	글로벌학부											
글로벌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글로벌 칼리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생명	생명시스템과학과	18	42	60	16	9	18	43	-	21	8	136
79 79	공통과학 연계전공	12	38	50	-	-	-	-	-	-	8	
나노	식품영양학과	19	41	60	16	9	0	25	-	21	-	136
과학	화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8	136
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19	41	60	16	9	18	43	-	21	-	136
	신소재공학과	18	42	60	16	9	18	43	-	21	8	136
	간호학과	15	75	90	16	9	18	43	-	-	-	136
	수학과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광ㆍ전자물리학과	15	45	60	16	9	18	43	_	21	8	136
	생활체육학과	15	45	60	16	9	-	25	-	21		136
교양융복합	광고・홍보학 연계전공	6	30	36	-	-	-	_	-	-	-	
대학	금융공학 연계전공	6	30	36	-	-	-	-		-	-	

※졸업이수 주의사항

-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를 인정받아야 함.
-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 직과정 이수자 50학점, 법학부 48학점, 글로벌칼 리지 4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전 공부터 36학점 이수함(단, 교직연계전공은 전공 과목 50학점 이수)
- 4) 본 배정표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정표 를 적용받음
- 5)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2012학년도 입학생부 터 7개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6)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2005학년도 입학생부 터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별표 2]

전 공 지 망 원 서

학 번		소속학부								
성 명		이수학기		학적변동	□복학 □단	·축복학 □재입학				
주 소										
연 락 처	Tel.()		/	′ H.P.						
전공지망	제1지망	제2지망	저	1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우선순위										
상기 본인은 1	상기 본인은 1999학년도 00 <u>학부</u> 학생으로 위와 같이 전공지망을 하고자 합니다. 1999 년 12월 7일									
					망자 :	(인)				
				។	인자 :	(인)				
성 적	1/1학기		1,	'2학기	총	등 평점평균				
(평점평균)						/4.50				

- ▶ 본인이 직접 기록하여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친권자외 대리접수 불가)
- ▶ 학부별 개설 전공 수만큼을 전공지망 우선순위에 기재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 접수 후, 전공지망 우선순위 변경은 불가능 하다.
- ▶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신청한 후 휴학을 하여야 한다.▶ 연락처는 학적부상의 주소를 기재하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전

화번호는 보호자 전화와 현재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번호	
------	--

				접수번호						
전공지망원서(학생보관용)										
학 번		소속학부								
성 명		학 년		이수학기						
전공지망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우선순위										
접수확인	학 부 장		(인) 학부(전공)조교	(인)					

► 전공지망원서의 학생보관용은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전공지망원서 학생보관용은 학부별 전공조교가 확인한 즉시 수령한다.

등록에 관한규정

1984. 3. 1 제정 1999. 3. 1 개정 1999. 8. 1 개정 2000. 8. 1 개정 2005. 2. 4 개정 2007. 9. 1 개정 2011. 2. 8 개정 2012. 2.10 개정 2012. 7.31 개정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납부방법) ①등록금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그 보호자 연서로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을 한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 해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2분의 1 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기일을 2개월 간 연장할 수 있다.
 - ②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분의 1이 경과된 이후에 휴학한 자는 복학 당해연도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다. (2011.2.8 개정, 2012.2.10 개정)
 - 1. 삭제 (2011.2.8 개정)
 - 2. 삭제 (2011.2.8 개정)
- 제 3 조(학점등록)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 은 다음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2.7. 31 개정)
 - 1.학부 (개정 2007.9.1)
 - 가. 3학점 이하일 때는 등록금의 6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
 - 나. 4학점 이상 6학점 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 7학점 이상 9학점 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012.7.31 개정)

2.대학원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 의 1 해당액 (2012.7.31 개정)
-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012.7.31 개정)

다. 삭제 (2012.7.31)

3.기 타

계절학기와 시간제 등록(수강료) 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점등록을 인정하여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단,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로정한다. (2005. 2. 4 신설)

- 제 4 조(납부기일) 등록금의 납부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의 개시 전 1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학년 입학당시의 등록금 납부기일은 예외로 한다.
- 제 5 조(등록금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12.2.10 개정)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 한 경우
 -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 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2012.7.31 신설)
 - ②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는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반환한다. (2012.2. 10 개정)
 - ③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최초 휴학일로 한다. (2012.2.10 개정)
 - 1.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 의 5 해당액 (2005.2.4 개정, 2012.2.10 개정)
 - 2.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2005.2.4 개정, 2012.2.10 개정)
 - 3.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005.2.4 개 정, 2007.9.1 개정, 2012.2.10 개정)

- 4.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반화하지 아니한다. (2005.2.4 신설)
- 제 6 조(징벌) ①총장은 등록금을 그 학기 수업일수의 3 분의 1이 경과한 때까지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012.7.31 개정)
 - ②입학금의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조(과태료 등) ①등록금의 체납에 대해서는 그 체 납자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제6조 또는 학칙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 및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교과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012.7.31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과정이수에관한규정

1982. 1	10. 1 제정	1999. 4.	1 전면 개정
2001.	3. 1 전면개정	2002. 3.	1 개정
2006.	9. 1 개정	2007. 2.	6 개정
2008.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0.	3. 25 개정	2010. 9.	28 개정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전공 (학과)의 학생이 졸업 후 2급 정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 제 2 조(이수신청 및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년도별 2학년 1학기말에 "교직과정이수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격은 전체학기 평균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30이상인 자로 한다.(후단 개정 2002.3.1)
 - ②편입학자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별도로 한다.(개정 2006.926)
 - ③교직과정 이수자의 선발은 2학년 2학기 수강신청 전에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해당전공(학과)으로 통보하며,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단, 2007학년도까지의 입학생중 문헌정보, 철학, 기독교, 디자인, 식품영양,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기계공학, 아동복지학과는 30%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8.3.1)
- 제 3 조(선발기준) ①선발기준은 전체 평점평균 50%, 전공성적 30%, 면접, 인·적성검사 20%의 비율로 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기준은 1순위 전공성적, 2순위 면접, 인·적성검사로 한다.(개정 2008.3.1)
 - ②2008년도 선발은 종전 기준에 준한다.(신설 2008.3.1)

- 제 4 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는 교직과 정 이수자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수자격을 상 실한다.(개정 2002.3.1)
 - 1.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된 자 (신설 2002.3.1)
 - 2. 교직과정 이수자중 전과(전공 변경)한 자(신설 2002.3.1)
 - 3. 교직과정 이수자중 제적된 자(신설 2002.3.1)
 - 4.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직과정 이수예 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 등으로 복학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 함. 단, 해당학과의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에 한합(신설 2008.3.1)
- 제 5 조(과목이수) ①교직과정 이수자는 [별표3] 의 소 요최저이수학점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은 2008학년도 까지는 총 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22학점[별표3-1]을 이수하여야 한다. (변경 2008. 3. 1, 개정 2009.3.1)
 - ②교직과정 이수자는 기본이수영역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이수영역은 1999학년도까지는 9학점 이상, 2000학년도부터는 14학점이상을,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21학점(7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08.3.1)
 - ③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 공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한다.
 - ④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직과목 중 "교육 행정및교육경영"과 "교과교육론"을 8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 제 6 조(성적) ①2008학년도까지 입학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각 80점(소수점 이하 버림)이상이어야 하며, 사범 대학 입학자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다전공 및 부전공시에도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3. 1) (개정 2008.3.1)
 - ②평균성적 환산방법은 성적계(취득학점수 ×100만점 으로 평가된 실점)를 수강신청학점계로 나눈다. 다

- 만, 졸업사정시 "F"로 평가된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수를 수강 신청 학점계에서 제외하여 산출한다.
- ③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모든 2급 교사자격 취득대 상자(사대, 교육대학원 포함)의 성적기준은 졸업평 균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하며, 교사자격을 취득하 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기재된 졸업성적만 적용 한다. (신설 2008.3.1)
- 제 7 조(무시험검정원서)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졸업 예정자는 소정기일 내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이하 검정원서라 한다)를 학적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2008.3.1)
 - 1.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개정 2002.3.1)
 - 2.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 3. 교직 및 전공성적이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4.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②검정원서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하며, 오기로 인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이 취소될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제 8 조(다전공 및 부전공) ①다전공으로의 교직이수는 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후 다전공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2009.3.1)
 - ②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으면 1전 공 및 다(부)전공으로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 ③다(부)전공 이수는 사범대학과 비 사범계 전공(학과) 중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만 가능하다.
 - 1. 2008년도 입학자까지의 다전공은 전공과목(제1전 공 및 제2전공)을 42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을 전공별로 각각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다전 공의 전공과목(제1전공 및 제2전공)을 50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포함)이상, 기본이수 영역 21학점(7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전 공의 경우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구분 없이 교직

- 과목을 면제하며,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추가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08.3.1, 2009.3.1)
- 2. 부전공은 제1전공을 60학점 이상, 부전공 전공과 목을 30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교 과교육영역 4학점은 전공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사범대의 경우 2001학번부터, 교직설치학과의 경우 2002학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3.1, 신설 가, 나, 다 호)
- 가. 교직설치 학과 : 2001학년도 이전 교직 선발자 는 부전공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나. 사범대 : 2000학번 및 복학자의 경우 3학년 복 학자까지는 부전공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다. 편입생 : 2001학년도 편입생까지는 부전공 전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라.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학부과정에서의 부전공 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를 폐지한다.(신설 2008.3.1)
- 3.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 터 21학점, 2000학년도 이수 입학자의 경우 14학 점,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9학점으로 한다.(개정 2008.3.1)
- ④학교급별이 다른 전공간의 부전공은 불가능하다. ⑤다전공시 교원자격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범대학 졸업자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제1호 (개정 2008.3.1)
 - 2.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중등학교 정교사 2 급 제5호(개정 2008.3.1)
 - 3. 교직과정 이수자의 사범계 다전공 : 중등학교 정 교사 2급 제5호(개정 2008.3.1)
 - 4. 사범계 학생이 비 사범계 다전공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제5호 (개정 2008.3.1)
 - 5. 아동복지학전공 교직과정 이수자 : 유치원 정교사 2급 제2호(신설 2002, 3, 1)
 - 6.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사서교사 2급

제1호 (개정 2008.3.1)

- 7. 식품영양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영양교사 2급 제1호 (개정 2008.3.1)
- ⑥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 이수는 [별표4], 2009 학년도 입학자부터 다전공교과목 이수표는 [별표 4-1]과 같다.(개정 2008.3.1)
- ⑦다전공 및 부전공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기준으로 하고, 2005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자는 학칙에 의거 선발하고,, 2005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자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8.3.1)
- 1. 사범계 학과 : 입학정원의 50%이내
- 2.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10%이내
- 82006년도 입학자부터 다전공의 선발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며, 부전공은 폐지로 인하여 선 발하지 않는다.(1,2호도 신설 2008.3.1)
- 1. 사범계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
- 2.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정원의 20%이내
- ⑨학과(별) 다전공/부전공 선발인원 현황표는 [별 표5]와 같다. (신설 2008.3.1, 개정 2009.3.1)
- 제 8 조의 1(다전공 신청자격) 다전공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3.1)
 - ①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이수선발 자 중 3학기를 이수한 자로 한다.
 - ②복학생의 경우 2학기를 이수하고 2학년 1학기에 복학한자는 당해연도의 2학년 학생들과 같이 신청할수 있으며, 2학년 2학기에 복학하는 자는 2학년 2학기말 여석이 있는 범위안에서 신청할수 있다.
- 제 8 조의 2(다전공 신청시기, 선발시기) 다전공의 신청시기 및 선발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3.1) ①다전공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며 2학년 1학기말부터 3학년 2학기말까지 신청한다. 단, 편입생의 다전공 신청은 사범대학에 편입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08.3.1, 2009.3.1)
 - ②다전공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1기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배정
 - 2. 제2기준: 특정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사범계학 과는 입학정원의 50%,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 정원의 10%를 상회할 경우에는 다음순위에 따라 배정하며,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0%,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 의 20%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3.1)

- ② 1순위: 전체 교과목 성적순
- (J) 2순위: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 © 3순위: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 ③3전공 신청은 2전공 이수중인 자로 2전공 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3전공 신청이 가능하 다.(개정 2008.3.1, 2009.3.1)
- ④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부전공 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삭제 2008.3.1>
- 1. <삭제 2008.3.1>
- 2. <삭제 2008.3.1>
- ⑦ <삭제 2008.3.1>
- (나) <삭제 2008.3.1>
- 따 <삭제 2008.3.1>
- 제 9 조(교육실습) ①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 사활동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3.25)
 - ②학교현장실습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중 4 학년(6학기 이상 이수)진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5)
 - ③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0.3.25)
 - ④"학교현장실습신청원"은 교무연구처 교직과로 제출 한다.(개정 2010.3.25)(개정 2010.9.28)
 - ⑤교육봉사활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3.25)
- 제 10 조(연계전공) ① 교직연계전공은 표시과목별로 아 래의 해당 전공(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만이 이수 할 수 있다. (신설 2002.3.1)
 - 1. 공통사회 : 역사교육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개정 2006.9.26)(개정 2010.9.28)
 - 2. 공통과학 : 광·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개정 2006.9.26)(개정 2010.9.28)
 - 3. 도덕·윤리 : 교육학과, 철학과(개정 2006.9.26)
 - ②교직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연계 전공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 다. 단,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는 1 전공, 연계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졸업평균

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3.1)

- ③교직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전공 42학점, 연계전공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교 과교육영역 4학점이상 이수하여야하며, 2009학년 도 입학자부터는 1전공 50학점, 연계전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수하고, 연계전공의 교직과목은 면제된다. (개정 2008.3.1)
- ④해당 전공(학과)별 중복인정 학점은 15학점 내에서 가능하며, 전공(학과)별 중복인정과목은 따로 정한다.
- 제 11 조(교원양성위원회)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3.1)
- 제 12 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과 교육대학원장, 사범대학장, 교육학과장, 교원양성에 관한전문가(외부위원)1인,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가있는 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8.3.1) (개정 2010.9.28)
- 제 13 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2.3.1)
- 1. 교원양성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및 운영, 평가
- 에 관한 사항(개정 2008.3.1)
- 2. <삭제> (2008.3.1)
- 3. 교육실습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4.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에에 관한 사항(개정 2008.3.1)
-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개정 2008.3.1)
- ② <삭제> (2008.3.1)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 되, 도서관학과 및 제6조, 제7조 제2,3항, 제8조, 제9 조 제1,2항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전면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전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 행하다.
- (2)(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 되 제2조 제1항중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교직과 정이수신청원"을 제출한 후 학적변동으로 변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학 연도별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다.

부 칙

- ①(시행일)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중 제8조 제3항의 제2호, [별 표4]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학년도 이 전 입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2)(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중 제8조제3항의 제2호의 라. 제8조 제(8)항.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제8조의2 제 ④항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학 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2. 2008년도 선발은 종전 기준에 준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별표1)

교직과정이수표

['81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영 역	과 목	<u>소요</u> 최지	네이수학점
역사・철학・사회	· 학교와 지역사회(필수) · 교육원리, 발달심리, 중등교육론 등(선택)	4학점 이상	
심 리 학	·교육심리, 발달심리 등(선택)	2학점 이상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평가(선택)	2학점 이상	12학점 이수
과 목 지도법	• 각과목(필수)	2학점	
교 육 실 습	· 각과목(필수)	2학점(4주)	

※ 사서교사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실습 대신에 실무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별표2)

교직과정이수표

['82, '83학년도 입학생 적용]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역사・철학・사회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원리, 교육사, 중등교육론, 교사론 및 유아교육개론 등(선택)	6학점 이상		
심 리 학	·교육심리, 발달심리(선택)	2학점 이상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평가, 유아교육과정 (선택)	4학점 이상	16학점 이수	
과 목 지도법	·각 과목(필수)	2학점		
교 육 실 습	· 각 과목(필수)	2학점(4주)		

※ 사서교사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실습 대신에 실무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174·2013 한남대학교 요람

(별표3) 교직과정이수표 ['84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힉	-점
교 육 이 론	 교육학개론(2) 교육사회(2) 교육철학 및 교육사(2) 교육심리(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 	14학점(7개과목전부)	20학점 이수
교과교육	교과교육론(2)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2)	4학점(2개과목 전부)	
교 육 실 습	· 교육실습(2)	2학점(4주)	

(별표3-1) 교직과정이수표['09학년도 이후 입학생적용] (개정 2010.9.28)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	점
교 육 이 론	· 교육학개론(2) · 교육사회(2)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교육심리(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 교육과정(2) · 교육평가(2)	16학점(8개과목) 중 14학점(7과목) 필히 이수	22학점 이수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 ・교직실무(2)	4학점(2개과목 전부)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2)교육봉사활동(2)	4학점(2개과목 전부)	

(별표4)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표

전 공	전공이수학점	교직과목 이수	교육실습	기본이수영역	발급기준
1전공	전공 60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1전공 42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1전공, 다전공, 교직 성적이 각
다전공	다전공 42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아동복지, 문헌 정보, 식품영양 만 별도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각 평균 80점 이상
버기기	1전공 60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 아동복지, 예·체능계, 문헌정 보, 식품영양만 부전공 불가
부전공	부전공 30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1전공, 부전공, 교직 성적이 각 각 평균 80점 이상

- 전공이수학점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부전공의 부전공 전공이수학점은 이 규정 제8조에 따른다.
- 기본이수영역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전공이수는 2006년~2008년입학자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4-1) 다전공 교과목 이수표['09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전 공	전공이수학점	교직과목 이수	교육실습	기본이수영역	발급기준
1전공	전공 60학점	전 과목(22학점)	필히 이수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사대 포함)
다전공	1전공 50학점	전 과목(22학점)	필히 이수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
나신 등	다전공 50학점	면 제	면제가능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사대포함)

(별표5)

(2006학년도 입학자 기준)

~11	입학	승인	선발	인원		-33	입학	승인	선발	인원	
학과	정원	인원	다전공	부전공	비고	학과	정원	인원	다전공	부전공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12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정보통신공학과	60	12	12		
일어일문학과	40	4	8			기계공학과	60	18	12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8			경영학과	110	11	22		
문헌정보학과	40	12	8			회계학과	100	10	20		
철학과	40	12	8			무역학과	60	6	12		
기독교학과	40	12	8			경영정보학과	50	5	10		
디자인학과	60	18	12			경제전공	70	7	14		
국어교육과	40	40	40			행정학과	70	7	14		
영어교육과	40	40	40			아동복지학전공	40	12	8		
교육학과	40	40	40			생명과학전공	50	4	8		
역사교육과	40	40	40			화학전공	60	6	12		
미술교육과	30	30	30			식품영양학전공	50	15	10		
수학과	60	6	12			신소재공학전공	50	5	10		
광 • 전자물리학과	50	5	10			아동영어학전공(야)	30	3	6		
의류학과	40	4	8			경영학과(야)	30	3	6		
컴퓨터공학과	70	7	14			회계학과(야)	0	0	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5	10			무역학과(야)	0	0	0		
미디어영상전공	45	5	10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2007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컴퓨터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5	9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미디어영상전공	45	5	9	
일어일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12	12	
프랑스어문학	40	4	8		정보통신공학	60	12	12	
문헌정보학과	40	12	8		기계공학과	60	18	12	
철학과	40	12	8		경영학과	140	14	28	
기독교학과	40	12	8		회계학과	100	10	20	
디자인학과	95	18	18		무역학과	60	6	12	
국어교육과	36	36	36		경영정보학과	55	6	11	
영어교육과	36	36	36		경제전공	70	7	14	
교육학과	35	35	35		행정학과	100	10	20	
역사교육과	36	36	36		아동복지학과	40	12	8	
미술교육과	27	27	27		생명과학과	50	5	10	
수학교육과	20	20	20		화학전공	60	6	12	
수학과	60	6	12		식품영양학과	50	15	10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신소재공학전공	50	5	10	
의류학과	40	4	8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2008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컴퓨터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멀티미디어공학	45	5	9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미디어영상전공	45	5	9	
일어일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6	12	
프랑스어문학	40	4	8		정보통신공학과	60	6	12	
문헌정보학과	40	4	8		기계공학과	60	6	12	
철학과	40	4	8		경영학과	140	14	28	
기독교학과	40	4	8		회계학과	100	10	20	
디자인학과	95	10	19		무역학과	60	6	12	
국어교육과	36	36	36		경영정보학과	55	6	11	
영어교육과	36	36	36		경제전공	70	7	14	
교육학과	35	35	35		행정학과	100	10	20	
역사교육과	36	36	36		아동복지학과	40	4	8	
미술교육과	27	27	27		생명과학과	50	5	10	
수학교육과	20	20	20		화학과	60	6	12	
수학과	60	6	12		식품영양학과	50	5	10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신소재공학과	50	5	10	
의류학과	40	4	8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2009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컴퓨터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50	5	10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미디어영상전공	40	4	8	
일어일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6	12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8		정보통신공학과	60	6	12	
문헌정보학과	40	4	8		기계공학과	60	6	12	
철학과	40	4	8		경영학과	140	14	28	
기독교학과	40	4	8		회계학과	100	10	20	
국어교육과	36	36	36		무역학과	60	6	12	
영어교육과	36	36	36		경영정보학과	55	6	11	
교육학과	35	35	35		경제전공	70	7	14	
역사교육과	36	36	36		행정학과	100	10	20	
미술교육과	27	27	27		아동복지학과	40	4	8	
수학교육과	20	20	20		디자인학과	95	10	19	
수학과	60	6	12		생명과학과	50	5	10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화학과	60	6	12	
의류학과	40	4	8		식품영양학과	50	5	10	
의류학과	40	4	8		신소재공학과	50	5	10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에관한규정

1998. 3. 1 제정

1998. 9. 1 개정

1999. 3. 1 개정

2001. 3. 1 개정

2006. 3.2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남대학교 학칙 제19장 제76 조에 의한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형 및 등록

- 제 2 조(등록정원) 시간제학생의 등록정원은 당해 년도 입학정원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년도 학 과(부)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3 조(수업학기) 수업기한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 기는 제1학기, 제2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고 매 학기 전형을 거쳐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 제 4 조(등록시기)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 일전의 소정 기일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 록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 5 조(등록자격)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 6 조(지원절차) ①본 대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원 서와 전형료를 다음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이미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 지 아니한다.

- ③계속지원의 경우에는 전형료 및 제출서류의 일부 를 면제 또는 삭감할 수 있다.
- 제 7 조(전형 시기) 지원자에 대한 전형시기(학기, 계절 학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 조(전형 방법) ①시간제학생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학과(부)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시간제학생의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선발하되,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 부)의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③계절학기의 전 학기에 선발되어 등록한 자가 전 일제 취득기준학점의 1/2 이하 범위내에서 부족 학점을 계절학기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 선 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④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한 다. (개정 2006.3.21)
- 제 9 조(등록금) ①등록금은 학점당 등록금으로 책정하되, 정규학생의 계열별 학기당 총 등록금액을 취득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②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 ③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고, 시간제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야 한다.
 - ④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입급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 제 9 조의 2(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한다.
 - 1.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3. 전염병 및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 타 학생의 수학 에 지장을 주는 자
 - 4. 기타 해교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수강신청

- 제 10 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시간제 학생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강 신청한다.
- 제 11 조(신청 기준) ①정규학기에는 전일제 학생의 학

- 기당 취득기준학점(18학점을 원칙으로 함)의 1/2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②계절학기에는 전일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수 강가능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2 조(미수강 신청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 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교무연구처의 확인을 거쳐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 14 조(중복수강 금지) 동일과목을 중복수강 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15 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부)에서 심사하여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 을 인정한다.

제 4 장 교 과

- 제 16 조(교육과정) 시간제학생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과 전공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전일제학생과 통합·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7 조(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한다. 기타 이에 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편입학·학위수여

- 제 18 조(신분 변경) ①시간제학생의 편입학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따른다.
 - ②시간제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
- 제 19 조(학위수여) ①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칙 제41조 및 42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갖

- 추어야 하다.
- 2. 졸업 요구학점 중 85학점 이상의 교과목(학점) 을 본 대학에서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3. 교양필수과목은 최초 등록한 학년의 교육과정 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 학과(부) 기초과목 : 전부 이수
 - * 순수교양필수 : 각 영역별(기독교, 인성, 생활작문, 실용영어, 정보)로 1과목 이상 이수
- 4. 전공과목은 54학점 이상을 필수, 선택과목 구분 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 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학위종별은 본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지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해당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한다.

제 6 장 학 적

- 제 20 조(학적관리) 시간제 학생의 학적은 별도로 기록·관리한다.
- 제 21 조(학년배정) 시간제 학생에게는 특별히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 한다.
- 제 22 조(학적변동) 시간제 학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휴학, 복학, 수료, 제적, 재입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7 장 학생활동

- 제 23 조(학생활동 금지) 전일제 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 24 조(학칙준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제증명

- 제 25 조(제증명 발급) 시간제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및 학생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생증을 도서관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26 조(발급신청)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및 학생증 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다.
- 제 27 조(준수사항) ①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②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증명을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③제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신분을 밝히는 사 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28 조(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2·2013 한남대학교 요람

(별표1) 학사학위신청서

	학사학위신청서											
	성	명										
ત્રી એ બો	주민-	등록번호										
신 청 인	전	공										
	주	소										
	a -a		1		- 		교양과목		교양과목	전공과	목학점	
학점취득시항	총	학 점	학 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과목학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사학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2) 학위증서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공: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학위번호 : 학점 〇〇〇〇

주요 학사행정 안내

1. 학기등록

- 1)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제적된다.
- 2) 8학기 등록을 마치고 8학기(단, 건축학전공은 10학기)까지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게 될 때 잔여 학점수가 3학점이하일 때는 등록금의 6분의 1, 잔여 학점수가 4학점 이상 6학점 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 잔여 학점수가 7학점 이상 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채플, 논문)의 수강에 따른 등록금은 납입하지 않으나, 등록금 이외의 기타 납입금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 2003.3.1, 2007.3.1)
- 3)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만 5주가 경과되기 이전에 일반(가사, 질병, 기타) 휴학한 자가 일정기 간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면제한다.
- 4)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만 5주가 경과된 이 후에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 5) 중간고사를 포기하고 군입대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 6)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당해 학기 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휴학한 자가 제대 복학하는 경우 복학 하는 학기 등록금은 면제하고 기타 납입금은 납부하 여야 한다.
- 7)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8) 징계처벌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 을 필하여야 한다.
- 9) 이미 납입된 등록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 2. 수강 신청

- 1)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 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통합정보시스템의 수강신청 화면에 정확히 입력한 후 확인한다.
- 2) 신청학점은 매학기당 15-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학업성적 능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학점 상한선을 준수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_	o`	ŀ	래	_
---	----	---	---	---

구분	2010학년도 입학생까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丁七	전체학과	인문계열, 법과대학,	공과 이과 예체능			
	선세약과	린튼글로벌칼리지	시범계열,건축학전공			
4.20이상	24학점	23학점	24학점			
400이상	21학점	20학점	21학점			
1.50이상	19학점	18학점	19학점			
1.50미만	16학점	15학점	16학점			

3) 기 타

- 가) 최종학기의 수강신청은 6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 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 득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수강신청한 과목을 이수치 않으면 "F"로 처리 한다.
- 바) 수강신청 상한선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 사) 초과 신청한 학점은 낙제과목, 교양선택, 전공 선택 및 기타 과목 중에서 교무연구처의 판단 에 의해 취소된다.
- 아)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 재입학 및 편입학(일반, 군위탁, 학사) 학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 한하여 최대 21학점까 지 신청할 수 있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계열 및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 지 소속학과(부)로 재입학 또는 편입시에는 최대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4) 수강신청 방법

- 가) 수강신청을 위한 임시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편 람 및 수업시간표를 확인한다.
- 나) [학부(또는 대학원)전용수강신청] 를 누르고 수강신청화면으로 이동한다.
- 다) [수강신청화면] 사용자 화면 및 암호를 입력 하고, 확인라을 클릭한다.
 - (●사용자번호 : 학번 8자리 ●초기암호 : 주 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라) 교과목조회를 누르면 원하는 교과목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고 수강신청하면 된다.
- 마) 수강신청인원이 넘는 과목은 활성화되지 않으 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 바) 수강신청의 취소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바로 취소되다.
- 사) 연결과목 신청은 수강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과목을 신청하면 같이 수강해야 될 과목 (강독과실험 등)의 분반들이 화면에 표시되 며,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의 과목 및 분반을 선택하면 연결과목 신청을 할 수 있다.
- 아)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8학기째 수 강신청 정정기간에 "부전공신청"화면에서 부 전공 학과(전공)을 선택해야만 부전공으로 인정 받는다.

5) 학점포기제

- 가) 이미 취득한 "C", "D"학점 과목의 성적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1주 전 소정의 기간에 Hi-portal로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성적을 취소하더라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 으며, 학사경고는 삭제되지 아니한다.
- 다) 교무연구처에서는 성적을 취소한 해당학기의 성적을 다시 계산하여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 출한다.
- 라) 1학년의 경우 전공배정 전까지 포기를 불허한 다.
- 마) "F"학점의 경우 교육과정 변경으로 과목이 폐 지된 경우에 재수강이 불가능하므로 포기 가

능하다

바) 졸업예정자의 학점포기는 4학년 마지막 학기 성적에 한하여 7월 셋째주(8월 졸업자), 1월 셋째주(2월 졸업자)중에 신청할 수 있다.

6) 수강신청 확인 및 취소

- 가) 수강신청 확인은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포기 기간 경과 후 학과(전공)사무실에 배포된 수 강신청확인서를 자세히 확인한 후, 반드시 서 명한다
- 나) 수강신청 변경은 학사일정상 수강신청 변경 기가 동안 변경하다.
- 다) 수강신청 취소는 학사일정상 수강신청 취소기 간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 다. 단, 수강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수 업

1) 학년, 학기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수업일수

- 가)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 나) 천재지변 기타 학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 수업계획서

각 교과목은 학기초 배부되는 수업계획서 (Syllabus)에 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4) 강의시간

가) 50분제 강의시간

교시	시 간	교시	시 간
제 () 교시	08:00~08:50	제 5 교시	13:00~13:50
제 1 교시	09:00~09:50	제 6 교시	14:00~14:50
제 2 교시	10:00~10:50	제 7 교시	15:00~15:50
제 3 교시	11:00~11:50	제 8 교시	16:00~16:50
제 4 교시	12:00~12:50	제 9 교시	17:00~17:50

나) 75분제 강의시간

교 시	시 간	교시	시 간
제 A 교시	09:00~10:15	제 F 교시	16:30~17:45
제 B 교시	10:30~11:45	제 G 교시	18:00~19:15
제 C 교시	12:00~13:15	제 H 교시	19:30~20:45
제 D교시	13:30~14:45	제 I 교시	21:00~22:15
제 E 교시	15:00~16:15	제 J 교시	22:30~23:45

4. 출석 및 결석

- 1)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은 총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는 사전에 교무연구처 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이 날인된 공결원을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결 승인사항은 다음 과 같다.
 - 가) 학생회 관계 등 정부지시로 불가피하게 된 경우나) 대학신문 편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경우
 - 다)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예비역 및 민방위 교육훈련, 징집대상자의 신체검사 등 병역의무 관계로 불가피한 결석은 3분의 1 선에서 특별 고려한다.
 - 라) 개인결석은 공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개강일 이후에 등록금을 추가기간 내에 납입 하는 학생은 여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등 록 전일까지 결석으로 인정한다.
 - 바) 채플의 경우 4번 이상 결석 시 '미이수'로 한 다.

5. 시 험

1)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 및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정

기시험 외에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처벌

- 가) 시험 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부정행위 과목만 "F"로 처리한다.
- 나) 부정행위로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때 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F"로 처리한다.
- 다) 정학처벌로 인하여 시험기간 중 시험을 보지 못하였거나 수업일수가 총수업일수의 3분의 2 에 미달되어 시험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 당하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간 주한다.

6. 계절학기

1) 계절학기 수강자격

- 가)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성적이 우수 하거나 복학, 재수강 또는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휴학 중에 있는 자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
- 나) 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신청 및 개설과목

- 가) 매 계절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 이내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 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은 매 계절학기당 8학점 이내)이며, 수업시간은 4주 이상으로 하다.
- 나) 과목 개설은 1과목당 20명 이상, 전공과목은 개설전공(학과)학년 편제정원의 25%이상 수강 신청자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학업성적 평가

1) 성적평가는 시험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학업성 취도를 담당교수가 성적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성 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 ① 편입학생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석, 예습, 복습, 과제,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하다

가)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D"급 이상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실점	평점	등급	실점	평점
A^{+}	97~100	4.5	$C^{\scriptscriptstyle +}$	77~79	2.5
A _o	94~96	4.3	C _o	74~76	2.3
$A^{}$	90~93	4.0	C	70~73	2.0
B^{+}	87~89	3.5	D_{\downarrow}	67~69	1.5
Bo	84~86	3.3	D_{\circ}	64~66	1.3
B	80~83	3.0	D_	60~63	1.0
			F	0~59	0.0(낙제)

나) 평점평균의 계산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성적평점계 를 수강신청 학점으로 나눈다.

즉, (과목별평점×학점)의 총합

수강신청 총학점

다만, 졸업사정시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F"로 평가된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수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3) 성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

가)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 인정

학기도중 중간시험만을 마치고 병역, 기타 법 령에 의하여 군입대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개강일로부터 군입대일 1주일 전까지의 수업시 간수를 총 수업시간수로 하여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된다.
- ② 중간시험 응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일부 교과목만 응시했을 경우 불응한 과목은 자동 "F"로 처리된다.
- 나) 편입생의 학점 인정
- (1)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학 점 중 본교의 소속학과(부)의 교육과정 범위내 에서 해당 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교무연구처 8. 휴학, 퇴학 및 제적 에서 최종 인정한다.

- 편입학생 성적인정 학점 기준 -

구분	2012년 편입생까지	2013년 편입생부터	비고
인문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70학점	64학점	3학년 1학기
공과·이과·예체능· 사범계열,건축학전공	70학점	68학점	편입학 (총 4학기
학사편입	72학점	68학점	인정)

- ② 인정한 학점내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학 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해당 학과(부)의 심의 및 교무입학처의 인정 을 받은 학점은 학적부에 "편입학 ㅇㅇ학 점 (교양ㅇㅇ학점, 전공ㅇㅇ학점)인정"으로 기재하다.
- ④ 전공 인정학점은 인정된 과목과 학점수를 병 기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 ⑤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동일 교과목에 한하며, 전적대학 교과목의 학점수가 본교 교과목 의 학점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 고 학점수는 본교 교과목 학점수를 초과하 여 인정될 수 없다.
- ⑥ 편입학생은 졸업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 으로 평점평균을 산정하며, 인정된 전적대 학의 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2) 편입학생은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 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① 제3학년 1.2학기 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개설 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법 학부 60학점)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 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학사 편입학생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법학부 60학 점)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 포함) 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편입학생은 전과(부), 조기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1) 휴 학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의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 종 류

- ① 일반휴학(가사, 질병)
 -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이전까지는 등록금 납입없이 휴학이 가능하다.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과 학기를 포기하여야 한다.
- ③ 군입대 휴학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영장) 사본을 지참,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소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 (영장)사본 1부 및 본인, 보호자 인장을 지참하여 학사관리팀에서 휴학기간 연장 등의 휴학 절차를 필하고 입대하여야 한다.

④ 일반휴학중에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일반휴학 의 만료시점까지 일반휴학을 군입대휴학으로 변 경하지 않으면 일반휴학기간 초과로 제적처리됨 에 유의해야 한다.

나) 절 차

때학기 소정의 기간에 Hi-potal에서 휴학을 신청하 여야 한다.

다) 준비물

- ① 본인 및 보호자 인장(방문신청 시)
- ② 입영통지서 원본 및 사본(군입대의 경우), 종합 병원 진단서(질병의 경우)

라) 휴학의 제한

- ① 휴학원은 학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제적된다. 다 만, 군입대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병사유 인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1년)까지 연장허가 할 수 있다.

- ③ 입학한 첫 학기의 경우 군입대, 질병사유 이외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을 불허한다.
- 마) 휴학시 성적처리 : 학기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자 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사유를 기재하여 원서를 작성 날인 하고 학부(과)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 다.

3) 제 적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제적된다.

- ⑦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내)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 자퇴한 자
- 라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포함)
- 때 재학년한이 초과된 자(재입학 불가)
- 때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9. 복학 및 재입학

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다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 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구 분

가) 복 학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이 휴학기 간 만료시점에서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면, 복학이 된다.

- ① 시기: 규정된 등록기간 내
- ② 절차 : 소정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나) 재입학

제적된 학생에 한해 실시하며, 그 제한은 학칙 시행세칙 제43조(재입학)와 같다.

10. 전공변경(전과)

1) 허가조건

· 전공변경(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기 이상 이수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소속 학장을 경 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변경(전과)할 수 있다.

2) 허가범위

· 입학연도 기준으로 학과별 편제정원의 20%(단, 사범대,간호학과는 고등교육법 의거 별도정함)

3) 절 차

- 가)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와 소속대학(부)장의 승인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변경(전과)한다.
- 나) 학과(전공)는 전공변경(전과) 받아 소정의 전 형을 거쳐 적격여부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4) 유의사항

- 가) 전공변경(전과)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 (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전공변경(전과) 시점의 학년과 동일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1. 학사징계

학업성적이 열등한 학생에게는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사징계를 가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1) 학사경고

- 가)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0 미만인 학생에게 하되, 학과로 통보하고 그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하다.
- 나) 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시 1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단, 2011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법과계열, 린 튼글로벌칼리지 입학생은 15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단, 국제교류유학생 제외)은 학사경고를

반는다

2) 징계처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처분을 한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된 자
- 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다) 학업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 된 자
- 라)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 마)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3) 학사징계의 결과

징계의 결과는 본인, 보호자 및 학과(부)장에게 통고하며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따라서 졸업 후 취업시에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2. 졸 업

1) 정규졸업

규정된 수업년한의 재학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졸업종합시험, 작품발표 포함)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가) 졸업사정

졸업사정은 교수회의에서 행하며, 졸업이수학 점의 취득여부, 필수교과의 이수여부, 졸업논문 합격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사정한다. 이러한 졸업사정의 결과에 따라 학위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그 사정 대상과 기준 은 다음과 같다.

①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전체 평 적평균 2.0이상으로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졸업기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 다.

- 졸업기준학점 -

구 분	2006년 이전 입학생	2011년 이전 입학생	2011년 이후 입학생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140학점	136학점	128학점
공과 이과 예체능	140학점	140학점	136학점
사범계열	140학점	140학점	135학점
건축학전공	165학점	165학점	160학점

- ②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 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한다.(학칙시행세칙 중 별표 1 참조)
- ③ 졸업논문심사(졸업종합시험, 작품발표 포함)에 합 격하 자

나) 절 차

대상자 선발 졸업사정→교무위원회 심의→졸업생 확정→졸업대장 작성→졸업증서, 학위등록증 작성→학 적부 및 등록대장 정리→학위수여

2) 조기졸업

학업능력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면학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기졸업 지망신청에 의하여 선정된학생이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사정과절차에 의해 졸업요건을 갖출 때에는 학사 학위를수여한다.

가) 대 상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 또는 성적 우수자의 학점 초과취득으로 140학점(사범대학을 제외한 인문·사회계열은 136학점, 법학부의 2001학년도 이전입학생은 150학점, 건축학전공은 165학점)이 상을 취득하고 이수성적 전체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는 6학기(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수료 후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단, 2011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법과계열,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은 128학점 이상 취득자로 한다.

나) 절 차

조기졸업 희망지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신청서"를 학과 (부)장, 학장을 거쳐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에 제 출하여야 하다.

3)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졸업예정자는 졸업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 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단, 졸업 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부)에 대하여는 총장 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해 졸업종합시험 또는 실험 실습보고서, 작품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

가) 논문작성 및 제출가격

- ①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실기발표 계획서, 졸업종합 시험신청서)는 6학기를 이수(108학점 이상 취득) 하고 학기에 재학중인자,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이다. 단, 4년제의 경우 6학기 이수자 중 100학점 이상, 5년제는 8학기 이수자중 140학점이 상을 취득한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학점 취득 가능성을 심 사하여 논문작성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단, 2011 년 이후 입학생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 글로 벌칼리지 소속의 학생은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실기발 표계획서, 졸업종합시험신청서)는 4년제는 6학기를 이 수(102학점 이상 취득)하고 7학기에 재학 중인 자, 5년 제는 8학기를 이수(128학점 이상 취득)하고 9학기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단, 4년제의 경우 6학기 이수자 중 100학점, 5년 제의 경우 8학기 이수자 중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시기 의 졸업학점 취득 가능성을 심사하여 논문작성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조기졸업예정지는 최종학기에 졸업논 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② 논문작성 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다음 각 항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학과(부)별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작성의 전과 정을 지도받아야 한다.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 성격에 따라서 공동연구가 가능하며이 경우 각 연구자는 연구분야의 중복이 있어서는 아니되다.

- 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학기 3월 15일(후기졸업예정자) 및 9월 15일(전기졸업예정자)까지 소속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 논문작성의 방법, 규격, 양식 등은 소속학과에 서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합시험

① 시험과목

종합시험의 과목(혹은 영역)은 해당학과(부)에서 결 정 공고하며, 그 관리는 소속대학장이 한다. 각 과별 최근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학과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교육행 정학, 교육자료분석, 교육과정론

가정교육과 : 영양학, 피부재료학, 주거학, 가정경영론, 아동학

수학전공: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광·전자물리학전공: 전자기학, 역학, 양자물리학 화학전공: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식품영양학과 : 식품미생물학 및 위생법규, 생화학, 식이 요법, 영양학, 식품화학, 단체급식

생명과학전공 : 동물분류학, 세포학, 식물분류학, 동물생 리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고분자공학전공 : 고분자유기, 고분자물리, 실험결과 발표

생활체육학과 : 체조, 자격증1, 자격증2, 자격증3

의 류 학 과 : (졸업작품)

미생물학전공 : 미생물분류학, 미생물유전학, 바이러스 학, 미생물생리학, 생화학, 균학

컴퓨터공학전공 : 전자계산기구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제

산업시스템공학전공 : 생산계획 및 시스템공학, 품질 및 경 제성공학, OR 및 확률, 컴퓨터공학

건축공학전공 :(졸업작품)

토목환경공학과 : 구조역학, 토질역학, 수리학, 철근 및 콘크리트

전자공학과 : (졸업작품)

정보통신공학전공 :전자회로, 정보통신기기, 전자계산일 반, 정보통신시스템

기계공학전공 :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 기 계공작법, 영어 또는 제2외국어

경영정보학전공 :졸업시험, 자격증

다) 졸업작품

예능계 4학년 학생으로서 6개 학기를 이수하고 7개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이 그 자격이 된다.

① 졸업작품 규격

ㄱ. 동양화. 서양화 : 200호 이내

ㄴ. 조소 : 높이 3m 이내

ㄷ. 판화 : 켄트지 전지 이내

리. 서예 : 높이 3m 이내

ㅁ. 사진 : 전지 이내

ㅂ. 공예 : 100, 200, 300cm 이내

라)졸업인증제

자체 졸업인증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시행 전 학년도에 자체 졸업인증내규를 정하여 해당 대학장을 경유,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학위수여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칙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3. 부전공 제도

1) 신 청

부전공 신청은 8학기째(졸업직전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생통합정보시스템 "부전공 신청" 화 면에서 부전공학과(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 및 간호학과로의 부전공은 제외한다.

2) 부전공 표시인정

각 학과(부)에서 제시한 부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 증서에 부전공 이수를 표시한다.

3) 부전공 학점인정

- 가) 이미 취득한 부전공 과목학점은 부전공 학과 (부)를 변경 및 취소하였을 경우 그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나) 부전공 신청 전에 취득한 과목이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해당학과(부)의 전공과목으

로 개설될 때는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 다전공제도

1) 신청

가) 다전공(동일학부와 타학부 포함)을 희망하는 자는 6월 첫째주, 12월 첫째주 Hi-Potal 통합정보시스템의 "다전공 신청"에서 2전공이나 3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동일학부를 다전공할 때

- 2학기 이상 이수자 신청가능 단. 2011학년도 입학생부 터는 1학기 이상 이수자 신청가능)
- 타학부를 다전공할 때
- 2학년 1학기 말부터 3학년 2학기 말까지 신청가능
- · 단축복학하여 3학기를 이수하여야 전공배정을 받는 경우는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전공배정을 받는 시점에 다전공 신청 가능하다.

2) 선발

가) 동일학부 내의 다전공은 신청 및 포기 횟수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나) 타학부로의 다전공은 전공별 입학정원의 40%(사범 대 학생 100%이내 적용)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승인은 1인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또한 3전공은 2전공 이수 중인자로 2전공 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다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가 전공별 입학정원의 40%(사범대 학생 100%이 내 적용)를 초과할 때의 선발 방법

제 1순위 : 전체 교과목 성적순

제 2순위: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제 3순위: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다) 사범계 학과에서의 다전공도 학과 입학정원의 40% (사범대 학생 100%이내 적용)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비사범계에서 사범계 학과로의 다전공도 허용된다. 다만, 비사범계에서 사범계 학과로의 다전공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며, 사범계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자격기준은 비사범계 자격기준(5호)으로 표시된다.

3) 학점이수

가) 타학부(과)·연계전공 : 36학점 이상, 법학부 : 48학

점 이상, 글로벌학부 : 42학점이상, 건축학전공 72학 점 이상

- · 제1전공만을 이수할 경우 전공을 60학점 이상 취득하여 야 한다. 다만,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제1전공만을 이수할 경우 전공을 54학점(법학부 60학점)이상 취득하 여야 한다.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 학과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 다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1, 2 전공 모두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대상자 는 사범계 학생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제하된다.
 - 나) 전공과목은 제2, 3전공의 다전공 시작 시점의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 다) 1999학년도 입학자로부터 학부기초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다전공이 가능하다. 다만, 연계전공 이 수자, 1998학년도 입학자는 학부기초과목을 이수하 지 않고도 다전공을 할 수 있다.

4) 학점 인정

다전공 이수 전에 부전공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면 제과목과 인정과목이 다전공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전 공 시작 전에 어떤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 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과목으로 제1전공과 제2전공으로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나, 제3전공으로는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면제과목이란 : 타학부로 다전공을 할 때 다전공하지 않는 전공의 학부기초과목 중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과 목
- · 인정과목이란 : 타학부로 다전공 할 때 다전공 시작 이 전에 이수했던 과목 중 다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

5) 논문제출

다전공자는 이수한 다전공별로 학위가 수여되므로 제1전 공 및 제2, 3전공(연계전공 포함)에 대한 졸업논문(종합시 험, 졸업작품 포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5. 제증명 발급

1) 각종 증명서 발급

학부 학생들을 위한 취업 및 각종 시험 응시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교직과정 이수확인서, 학적부사본, 휴학증명서, 장학증명서, 입학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입학예정증명서 등의 제증명을 국문・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학위수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있고, 시간강사재직,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2) 접수처리

휴학원, 복학원, 자퇴원, 주소 정정 등 신청 즉시 처리해 주고 있다.

3) 민원업무: 민원FAX, 인터넷 증명

학사관리팀은 모든 민원 업무를 가까운 동사무소(면사 무소), 구청 등에서 FAX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FAX민 원 창구를 개방하고 있다.